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정선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연구

지도교수 엄 성 우

이 논문을 윤리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 정 선

박정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김 병 환 (인)

부위원장 엄 성 우 (인)

위 원 김 형 렬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물 안락사’에 덕윤리를 적용하여 자비와 친애의 덕목을 갖춘 자세로 대할 수 있는 방향과 이에 대한 도덕 교육적 함의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동물과 인간이 공생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 안락사는 생명의 의미가 논의의 핵심 고려 대상이 되며 이는 동물이 인간에 비해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과 한 생명에 대해 제3자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논의의 시의성이 있다. 이러한 윤리적 논의에 다양한 관점 중 덕윤리는 적절한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덕윤리에 따라 동물이 안락사되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며 그들의 생명 종결 단계를 존중하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비와 친애의 덕을 바탕으로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동물 안락사 논의에 자비는 적절한 덕목이며 적용할 수 있다. 자비란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보다 대상에게 고통을 감소시켜주거나 해악을 덜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덕이다. 또한, 자비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물을 안락사할 때 동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인지를 고려하여 안락사의 시행 여부나 방법을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 안락사 논의에 적절하다. 동물 윤리의 측면에서 자비의 덕목은 동물들이 지각이 있는 존재이며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지각 능력이 있는 동물들을 향해 연민과 공감에 기반한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물의 입장을 고려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비로운 행위이다.

둘째, 동물 안락사 논의에 친애 또한 적절한 덕목이며 적용할 수 있다. 친애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선의를 갖는 품성이다.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좋게 여기는 점들을 본받기 때문에 친애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서로를 만들어준다. 이런 친애가 바탕이 되는 관계는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곧 인간이 동물을 대할 때 친애의 품성으로 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친애는 상호 간의 관심, 존중 그리고 애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동물 윤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정은 동물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친애로 대하는 대상에게 그들의 생명을 종결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동물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합법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적법성을 떠나, 친애를 품은 대상에게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그들의 고통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덕스럽지 않다. 불가피한 이유로 안락사를 시행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인지, 효율성을 떠나 불가피한 것이 정말 맞는지 재고해보는 것이 덕스러운 품성을 갖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친애의 덕을 근거로 동물의 안락사를 검토해보았을 때, 그들의 고통과 상태에 더욱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동물 안락사와 관련된 자비와 친애의 덕은 도덕교육적으로 시사점이 있다. 생명윤리 교육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주변의 모든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존중인식은 자신, 타인,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해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며 동시에 올바른 자연관을 갖도록 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관의 형성은 타인을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의가 확장되며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 ‘안락사’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점의 학생들에게도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안락사에 대한 교육은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윤리의 부분이다. 이에 대해 친애는 오늘날 인성교육의 담론

맥락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유덕하게 완성하고 타인과 더불어 탁월성에 근거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친애를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동물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비는 교육 현장에서 공감, 연민, 이해를 중점으로 두는 환경을 형성하게끔 한다. 이러한 접근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공동체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과 소외된 집단(marginalized group)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동물 윤리에 덕윤리를 적용하여 채식과 실험동물의 윤리성을 살펴보는 연구나 동물안락사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를 펼치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동물 안락사에 덕윤리를 적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덕윤리가 동물 안락사를 포함한 동물 윤리 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동물 안락사에 대한 검토와 그것이 동물의 입장에서 어떠한지, 그리고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인간이 덕윤리적 관점을 가져보는 것은 나름의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을 계기로 동물 윤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신하여 덕스러운 인간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노력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본 고의 논의는 그러한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며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가이드로 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동물윤리, 동물 안락사, 덕윤리, 자비, 친애, 도덕교육
학 번 : 2021-28688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6
제 2 장 동물 안락사 개념과 실태	9
제 1 절 동물 안락사 개념	9
1. 안락사 개념	9
2. 동물 안락사의 의미	13
제 2 절 동물 안락사의 실태	19
제 3 장 동물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논의	27
제 1 절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27
제 2 절 동물 안락사에 대한 행위 중심 윤리학적 접근과 한계	32
1. 공리주의적 접근과 한계	33
2. 권리론적 접근과 한계	36
3. 종합적 검토	39
제 4 장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	41
제 1 절 동물 안락사와 덕윤리	41
1. 덕윤리의 의미와 특성	41
2. 덕 개념	45
3. 덕과 품성의 관계	48
제 2 절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의 옹호 ...	49

1. 동물 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시사점	49
2.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시사점	55
제 3 절 동물 안락사 논의에 필요한 덕	58
1. 자비	59
2. 친애	65
제 5 장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의 도덕교육적 함의	73
제 1 절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도덕교육적 의의	75
제 2 절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도덕교육적 적용	81
1.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동물 안락사의 연관성 ...	81
2.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덕윤리적 적용의 실제 ...	84
제 6 장 결론	90
참고문헌	96
Abstract	103

표 목 차

[표 1] 한국 동물의 종별 살처분 현황	73
[표 2] 공통 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 도덕과 내용체계-자연과의 관계	73
[표 3] 초등학교 도덕과 성취기준-자연과의 관계	75
[표 4] 친애에 기반한 동물 안락사 탐구 학습지	76
[표 5] 자비에 기반한 동물 안락사 탐구 학습지	7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점을 덕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그에 대한 덕윤리적 품성과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언한다. 동물들이 고통과 쾌락을 느낀다는 과학 기술의 발견은 동물들의 삶과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이 과거에는 동물을 의식주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대했다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동물들의 상태와 그들의 안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의 복지를 논의할 때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동물의 안락사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다. 동물에게 실행되는 안락사는 인간이 맞이하는 대부분의 안락사와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에 의해 생명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안락사를 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덕윤리는 이러한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점에 대해 개인의 도덕적 성격과 덕스러운 성품을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동물의 안락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단순히 과학적·경제적 손익 또는 합법의 유무를 고려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덕윤리적 관점에서 적합한 품성을 갖춘 자세로 대할 수 있는 방향에 주목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방향성을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동물 안락사의 덕윤리적 관점을 교육과정과 접목해보고자 한다.

인간은 동물에 대해 태초부터 깊이 생각해왔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을 이용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동물을 식량으로 사용하고 추위를 피하는 데 사용했으며 건축 자재로 쓰려고 동물을 죽였다. 시간이 지나 상아로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모피로 화려한 코트를 만드는 등 단지 흥미를 즐기기 위해 그들을 죽이기도 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과

학자들이 임상 연구를 위해 혹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막는 백신 개발을 위해 동물을 죽였다. 스포츠로서 사냥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등장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감행했던 사냥을 이제는 재미로 하게 된 것이다(Kazez, 2011: xvi). 이를 미루어보아 인간은 그동안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덕적 지위가 있는 존재, 즉 인간에게는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동물에게 거리낌 없이 행하였다. 하지만 동물도 인간과 같이 즐거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동물 윤리 논의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 개념은 자주 등장하는데, 최훈에 따르면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윤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묻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최훈, 2019: 21).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보는 동물 권리론과 동물 해방론은 도덕 교과에서 동물윤리를 소개할 때 제시되는 기본적인 동물 윤리이론이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은 모두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을 대우하는 방법과 그 윤리적 정당성을 재고하도록 한다(Rollin, 2009: 1083). 예컨대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나 쾌락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런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다. 박만평에 따르면, 현재 사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단순한 객체인 물건에서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객체로)가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 헌법(각각의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음)상 국가 목표조항으로서 ‘동물보호’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근거 규정까지 생겼다(박만평, 2022: 88).

하지만 이는 아직 작은 변화일 뿐 인간이 동물복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시대의 동물윤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미국의 농업과학기술협의회인 CAST(Council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보고서에 의하면 ‘동물복지’의 정의란 우리가 ‘우리가 동물에게 어디까지 무엇을 빚졌는지는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 즉,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음식, 물 그리고 주거지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동물의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well-being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CAST에 의해 집계된 동물 학대는 극히 일부이며 동물 학대의 99% 이상의 경우는 인간이 값싼 음식을 제공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행동의 결과이다. 이는 Rollin에 의하면, 인간이 다른 동료에게 부당한 고통이나 위해를 가하면 안된다는 것을 기본적인 윤리적 방침으로 삼을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부당한 행위들의 유해함에 대한 정당성의 논의 즉 동물윤리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ollin, 2009: 1082).

이에 본 연구는 동물의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동물과 인간이 공생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점, 그리고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근거한 윤리적 논쟁은 공장식 사육과 육식 문화, 동물실험, 반려동물 문화, 사냥, 동물원 존폐의 문제, 동물 안락사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정결, 2021: 305-309). 이 중 본 논문에서 동물 안락사를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명의 의미가 안락사 논의의 핵심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동물 안락사에 대한 논의의 시의성은 생명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안락사의 대상에게 그 어떠한 보상과 처치를 해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Rollin, 2009: 1082). 동물의 도덕적 지위 측면에서 안락사 논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동물의 죽음은 인간이 맞이하는 대부분의 안락사와는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동물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에 의해 생명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안락사를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실리적인 이득으로 생명을 종식시키는 일이 허용된다면 필요 이상의 많은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박찬구, 2016: 170). 덧붙여, 동물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들의 입장에서 안락사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점들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동물 안락사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본 고에서 제시하는 동물 안락사 논의의 핵심은 안락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그 현실의 괴리에 있다. 일반적으로 고통을 받는 동물을 안락사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락사 현실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시행되는 경우도 많으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명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안락사를 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경우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이다. 마지막 경우는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¹⁾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동물의 입장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물 안락사를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에 따라 존엄한 생명의 존폐의 유무가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안락사를 시행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한 윤리적 논의도 필요하다. 안락사의 처리를 과학적인 단계라고 바라보며 도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는 빈번하다. Rollin에 따르면, 전세계 안락사를 시행할 때 따르는 AVMA 가이드라인(미국수의사회 가이드라인)에 허용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윤리적이지 않은 예시들이 존재한다. 가령,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망 직전의 동물들은 전혀 안락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보고된 바가 있다(Rollin, 2009: 1085).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법 제2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점에 있어 덕윤리는 어떠한 행동이 우리를 보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가를 고민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적용하기 적합하다. 덕윤리는 개인의 성격과 인격을 발전시키며, 도덕적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윤리적인 행위를 추구한다. 이때, 안락사를 시행하는 기술자는 물론, 동물 안락사와 관련된 모든 인간은 안락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윤리적인 덕이 필요하다. 고통을 받는 동물의 삶을 종결해주는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들의 고통의 감소를 지향하며 삶을 증진하려는 윤리적인 덕을 갖추는 것이 안락사 대상 동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도의를 지키는 것에 가까워진다.

이렇듯 덕윤리는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이는 도덕 교육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덕적 품성의 중요성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덕이 동물 안락사, 그리고 더 나아가 동물 윤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학생들의 도덕 교육적 측면에서도 적용하여 그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물과 공생하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그들의 안락사와 관련하여 덕윤리가 함의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 안락사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동물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점에 덕윤리가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동물 안락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덕과 이것의 도덕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안락사의 개념 및 덕 개념을 윤리학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이에 관한 연구서 및 논문을 참고하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을 확장하여 이를 분석하고 재검증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나영&박상규, 2020:15). 이러한 측면에서 문헌 검토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주요 이슈에 관한 확인과 더불어 선행 연구의 경향을 바탕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선행 연구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구, 2011: 168).

연구자가 문헌을 검토하는 일반적인 유형에는 연구 배경과 맥락 검토, 역사적 검토, 이론적 검토, 통합적 검토, 방법론적 검토, 메타분석을 통한 검토가 있는데(김구, 2011: 169-172). 이러한 문헌 검토 유형들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안락사 개념과 덕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배경과 맥락 검토’ 및 ‘이론적 검토’를 병행하고, 생명윤리와 관계된 덕은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나머지 검토 유형들은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전반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안락사 개념은 비침과 칠드레스(T.L. Beauchamp & J.F.Childress)의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와 미국수의사회(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한 안락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euthanasia of animals: 2020 edition) 문헌들 위주로 한다. 덕윤리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에우데모스 윤리학』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안락사와 덕윤리를 연관성을 허스트하우스(Rosalind Hursthouse)의 “Applying virtue ethics to our treatment of the other

animals”와 “Virtue ethics and the treatment of animals”를 그 범위로 한다. 허스트하우스는 동물윤리를 다룰 때 덕윤리는 사례별로 다루는 접근방식을 가지며 이에 따라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물음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김완구, 2017: 51).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동물윤리와 덕윤리의 연관성을 허스트하우스의 문헌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의 범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물 안락사와 관련하여 덕 윤리가 제시하는 바를 탐색한다. 2장은 동물 안락사 개념과 그 실태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첫 번째 연구문제와 연관된다.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의 그리스어로 “편안한 죽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과 상반되게 본 장에서는 단어에서 주는 인식과는 상반되는 안락사의 이면을 제시한다. 1절에서는 일반적인 안락사의 개념과 동물 안락사의 개념을 살펴본 후 동물 안락사의 의미를 제시한다. 그다음, 2절에서 동물 안락사의 실태를 다루면서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3장은 두 번째 연구 문제와 연결된다. 먼저, 1절에서는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동물 안락사 논의의 시의성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기존의 행위 중심 윤리학적 관점들, 즉 피터싱어의 공리주의적 접근과 리건의 권리론적 접근을 동물 안락사에 적용해보고 그 한계를 제시한다.

4장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으로 세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이 있다. 4장 1절에서는 앞 장들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 덕윤리적 품성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덕윤리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덕과 품성 개념을 살펴본 다음 2절에서는 그러한 덕윤리적 접근이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에 적합한 이유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동물 안락사 논의에 대한 덕윤리 접근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그다음 그러한 필요성이 왜 동물 안락사 논의에 적합한지에 대해 제시하여 안락사 논의에서 덕윤리가 갖는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3절에서는 동물 안락사 논의와 관

련있는 구체적인 품성적 덕에 무엇이 있는지 제언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비와 친애의 덕인데, 이러한 덕들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제언한다.

5장은 4장에 이어 세 번째 연구문제와 연결이 되며, 동물 안락사의 덕윤리적 접근에 대한 초등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는 덕윤리와 품성적 덕이 도덕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 후 그것을 적용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에서는 세 가지 연구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 2, 3, 4, 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동물 안락사가 우리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와 그 특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데에 덕윤리가 함의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순히 해당 논의점에 대한 함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안락사를 어떠한 태도로 인식할 것인지와 그것이 동물윤리 논의에서 개척해 나가야 할 새로운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도출해내고자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앞서 본 장의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물에 대한 도덕적 지위 논의 즉, 동물윤리 논의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을 인간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육식을 멈추고 동물실험을 중지하라고 하긴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기 위한 방법들을 점차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 안락사에 대한 검토와 그것이 동물의 입장에서 어떠한지, 그리고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인간이 덕윤리적 관점을 가져보는 것으로써 한걸음 나아가는 것을 기대한다. 본고의 논의는 그러한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며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가이드로 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 2 장 동물 안락사 개념과 실태

본 장에서는 동물 안락사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며 동물 안락사 개념을 정리하고 그 실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물 안락사의 개념을 제시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안락사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뒤 구체적으로 동물 안락사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 다음, 동물 안락사의 실태를 동물이 처한 상황별로 살펴본 뒤 동물이 안락사당하는 현주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들,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으로 분류하여 동물을 안락사하는 법령이 각각 존재하며, 상황별로 그들을 안락사하는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많은 동물들의 안락사가 비교적 쉽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장을 통해 동물 안락사가 시행될 때, 동물의 생명보다 인간의 실리가 고려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제 1 절 동물 안락사 개념

1. 안락사 개념

동물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안락사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락사(Euthanasia)는 조절되지 않는 고통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낼 의도를 가지고 가해지는 중재를 말한다(홍영선, 염창환, 이경식, 1999: 2). 안락사의 유개념은 생명종료이다. 김상득과 손명세에 따르면, 생명종료로서 죽음은 크게 생물학적 기능이 자연적으로 중단되어 죽음에 이르는 자연사와 그 생물학적 기능의 정지에 인간의 간섭이 들어간 비자연사로 나누어진다. 이 중 안락사는 비자연사에, 그것도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 죽음이다. 즉, 안락사란 죽는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김상득, 손명세, 2000: 97-98).

안락사는 두 가지 기준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 표현 여부이며 두 번째 기준은 안락사를 시행하는 자의 태도이다(류지한, 2003: 49). 먼저, 첫 번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의사표현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발적 안락사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를 말한다. 이때, 당사자는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며, 사전의료의향(advanced directives)과 같이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당사자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이해할 능력이 없을 경우의 안락사를 일컫는다. 대개 신생아나 중증의 심신 장애자 혹은 전에는 판단 능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실한 사람들(예컨대 노인성 치매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람들)로서 이전에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기준, 즉 안락사를 시행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김상득, 손명세, 2000: 99). 박찬구에 따르면, 적극적 안락사는 시행자가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의도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안락사를 말한다. 독극물을 투여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환자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한 후 단지 이를 도와주기만 하는 이른바 ‘의사 조력 자살’도 여기에 속한다. 이미 미국의 판례에서 드러났듯이 이는 살인으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치료자로서의 의사의 본분에도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질병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그 치료를 유보함으로써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가리킨다. 환자의 상태가 절망적인데도 투약을 하지 않거나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말하자면 질병을 방치함으로써 자연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다.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는 앞서 언급한 적극적 안락사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다. 가령 의식이 없는 중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수액주사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은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하다.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 안락사로 보이는 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다(박찬구, 2016: 173-176).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안락사는 고통을 받는 생명체에게 삶의 종결을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안락사는 생명체에게 고통을 중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마땅한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인식일 뿐, 안락사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안락사는 생명의 존폐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 주제이며, 이에 따라 윤리적 논의를 해야 하는 근거를 지금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생명은 존엄하고 중요한 가치이다. 이때, 안락사는 생명의 의미가 논의의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 되기(김요한, 2004: 263)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안락사는 생명을 종결함으로써 한 생명체의 최종 단계이고 종결 이후에 안락사를 당한 대상에게 보상을 해줄 수 없다(Rollin, 2009: 1082). 생명의 존엄성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안락사의 논의는 조심스럽고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우리의 임무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까지 우리 연민의 정을 넓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끌어안는 것이다(김완구, 김세훈, 2020:41). 인간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동물이라도 죽음은 생명체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가장 큰 피해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음'을 지향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Persson, Selte, Neitzke & Kunzmann, 2020: 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하며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생명은 존엄하며, 생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안락사의 논의 또한 시의성이 있다.

둘째,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이유가 죽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박찬구, 2016: 172-173). 고통받는 존재에게 삶을 종결시켜줌으로써 고통을 제거한다는 사실이 죽음을 정당화한다고 보는 것은 자칫 지나친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생명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예컨대 지나친 결과주의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방법을 간과할 수 있다. 죽음이란 생명을 종결시킬 정도로 큰 사건이며 단순히 고통이 끝난다는 이유로 삶의 과정을 무시한 채 죽음이라는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치유불가능한 병이라고 선불리 판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의사들이 질병의 치유 불가능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들의 경험에 의한 추정 이상의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단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면,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문성학, 1998: 245). 인간은 생명을 끝내도 된다고 판단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어려우며 한 생명체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확언할 수 없다. 안락사는, 생명체의 기대되는 미래가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에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불리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로써 생명체의 기대수명에 한계를 지음으로써 어쩌면 장기적일 수 있는 한 생명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Rollin, 2009: 1081). 미래에 대한 추측은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안락사는 장기적으로 살 수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넷째, 고통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이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도 상당수가 과도한 약물투여나 부족에 의해 그렇게 된 경우일 수 있다. 문성학에 따르면, 암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조사에서 장기간 진통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50%이상이 플라시보²⁾로도 그러한 통증이 적절히 조절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플라시보 효과: 진짜 약과 모양이 똑같은 가짜 약으로, 의학실험이나 정신요

하고 이 분야에서 정신 요법이 거의 발전되지 않았다. 오늘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약물 치료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 방사선, 렌트겐선, X선 치료법도 있으며 여러 가지 호르몬 투여법도 있다. 이 모든 방법들은 많은 경우에 놀랄만큼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준다(문성학, 1998: 245).

마지막으로, 주어진 순간에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확고하고 합리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구나 심하게 앓고 있는 상태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문성학에 따르면, 환자는 아침에 안락사를 부탁하고 싶어하다가도 오후에는 다르게 생각한다. 환자의 병태가 심하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환자의 가족들도 안락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문성학, 1998: 245).

2. 동물 안락사의 의미

동물의 안락사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안락사처럼 고통 없는 죽음을 야기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동물에 대하여 통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것을 말한다(박재학, 2020: 153). 특히, 동물 안락사는 수의학적 그리고 동물 관련 과학적 연구의 맥락에서 수용되며 필수적이다.

Reilly는 동물을 안락사할 때 그들이 최소한의 두려움, 불안, 고통, 괴로움을 맞이한 상태로 죽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은 동물을 빠른 시간안에 죽이거나 즉각적으로 동물을 무의식 상태로 만든 후 의식을 되찾기 전에 동물이 죽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안락사 직

법을 시행할 때 사용되며 약물의 화학적 효과 못지않게, 인간의 믿음과 기대로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믿음과 기대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 같은 치유 현상도 일으킨다.(박정호, 2017: 9-10)

전과 도중에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Reilly, 2001: 6).

하지만 인간의 안락사와 동물의 안락사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동물권리와 복지사전에 따르면 안락사의 의미에 있어 의료계와 수의학계에서의 차이가 있다. 인간의 안락사는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거나 살 가치가 없을 경우에 삶을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물의 안락사는 이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Persson, Selte, Neitzke & Kunzmann, 2020: 3-4). 앞서 제시한 안락사의 의미는 ‘죽는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죽음’이다. 하지만 동물 안락사의 경우, 꼭 동물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 되어서 그들을 안락사한다고 볼 수 없다. Persson, Selte, Neitzke, Kunzmann에 따르면, 동물을 키우던 인간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시킬 수 있으며, 개체 수가 과다하거나 동물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아니면 인간의 연구를 위한 조직을 얻기 위함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죽음을 안락사에 포함시킨다. 이로 미루어보아 수의학계에서는 안락사가 환자, 즉 동물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 안락사는 사실상 동물에게 ‘좋은’ 죽음이 아니며 고통이 없거나 규정을 따르는 정도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을 안락사할 때는 환자에게 최대한 상황을 맞추는 반면, 비인간 동물의 경우 그들이 직접 안락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Persson, Selte, Neitzke & Kunzmann, 2020: 3-4).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동물의 안락사는 앞서 제시한 인간 안락사 기준으로 비자발적 안락사³⁾ 또는 반자발적 안락사⁴⁾로 분류할 수 있다. 하

3) 비자발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는 환자가 더 이상 동의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죽음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Persson, Selte, Neitzke & Kunzmann, 2020: 4).

4) 반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는 인도적이지 않은 범죄, 가령 제2차 세계 대전, 에서 발생한 안락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료윤리에서는 환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안락사를 지칭한다(Persson, Selte, Neitzke & Kunzmann, 2020: 4).

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동물 안락사의 분류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동물은 자율성을 지니지 않는 개체(nonautonomous patients)이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물은 인간과 달리 자율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종결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보일 수 없다. 자발적인 동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들의 생사에 대한 선택권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그들을 비자발적 또는 반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한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Persson et.al.에 따르면 인간과 다르게 동물들은 안락사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안락사와 동물 안락사의 차이가 발생한다(Persson, Selte, Neitzke & Kunzmann, 2020: 4).

이런 인간 안락사와 동물 안락사의 차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동물 안락사와 실제 동물 안락사와의 괴리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동물 안락사는 동물에게 긍정적인 결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해결책으로서의 안락사이다. 따라서 동물 안락사란 키우는 동물이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동물에게 생명을 종결시켜줌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물에게 행해지는 안락사는 그러한 경우보다 인간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 안락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가지 분류 모두 자율성이 없는 동물의 생명을 인간이 박탈하는 행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안락사를 시행하는 목적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동물을 위하는 것이지만 동물의 생명을 인간이 임의로 종결시킨다는 한계점이 있는 안락사이다. 가령 반려동물이 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을 종결하는 경우, 우리는 동물의 의사를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동물보다는 안락사 시행의 목적 자체가 인간의 실리를 위할 때 시행되는 안락사이다. 가령,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할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

할 때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때, 동물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두 가지 안락사 모두 공통적으로 자율성이 없는 동물의 생명을 인간이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고에서는 동물의 안락사를 단순히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생명을 종결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 안락사의 시행에 따른 동물의 생명을 종결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살처분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안락사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인식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는 동물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다고 인식하지만 살처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전염병 등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라며 이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의 논의 주제인 동물 안락사에서 살처분을 제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 살처분은 농장동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가축(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이 안락사의 대상이 된다. 농장동물은 살처분이고 그 외의 동물은 안락사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근거한다. 실제로, 한국 동물의 살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하위항목으로 개와 고양이의 안락사 현황뿐만 아니라 토끼, 오리, 기니피그, 햄스터, 고슴도치, 이구아나 그리고 우리에게 살처분 대상으로 익숙한 가축(소, 돼지, 염소, 사슴)도 제시되어 있다.

[표1] 한국 동물의 종별 살처분 현황⁵⁾

개와 고양이의 안락사 비율	
기준	2010년-2017년 7월 총 58만 6,175마리
구분	안락사
전체	23.2%
개	26.2%
고양이	16.6%

5) 한국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살처분 수의 추이이다(박만평, 2022: 112).

기준	2010년=2017년 7월 총 58만 6,175마리
개	26.2%
토끼	21.9%
오리	21.4%
닭	17.8%
기니피그	17.0%
고양이	16.6%
햄스터	16.4%
고슴도치	15.9%
이구아나	12.9%
페럿	7.8%
염소	6.0%
앵무새	5.1%

둘째, 살처분의 방법⁶⁾에 따르면 사살, 전살, 타격, 약물 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 해야한다. 흔히 인식하는 바와 같이 안락사는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이고 살처분은 고통을 주며 죽이는 것이 아니다. 즉, 살처분을 시행한다는 것이 동물의 생명 종결의 과정에서 고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박만평, 2022: 92-96). 살처분의 잘못된 방식으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에 대한 대처로 돼지들을 생매장한 사건이 있다. 지난 2019년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파주 돼지농장의 살처분 현장에서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지 못한 돼지가 그대로 매장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이슈가 되었다. 의식이 있는 돼지를 그대로 생매장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지침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농림부가 작성, 배포한 SOP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법 중 현장에서 적용이 쉽고 신속

6)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동물의 즉각적인 의식 소실을 유도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⁷⁾ 즉, 생매장은 살처분은 규정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처분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안락사’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셋째, 생명은 관계의 존재이며 가축과 바이러스는 공생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리학의 목적은 우리 행위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생명 윤리학은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생명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적대시하고 박멸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생명을 관계인 공생명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은 오늘날 심각해지고 있는 생태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생명을 생명공동체로 인식함으로써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다(박종무&구인회, 2018: 34).

이를 종합하면, 살처분은 인간, 그리고 동물 사이에서의 전염병 확산, 예방의 목적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뿐 큰 맥락에서 안락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살처분과 동물 안락사 모두 동물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동물의 생명을 고통 없이 종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의 동물의 안락사 논의에는 살처분을 포함한 동물 안락사를 논의하고자 한다. 덧붙여,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생명을 종결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안락사로 명칭한다. 또한, 동물의 고통의 감소와 별개로 인간의 입장에서 실리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형식적 안락사, 가령 살처분 또는 동물실험이 끝난 건강한 실험동물 등

7) 김나리. (2019년 9월 19일). 또다시 자행된 생매장식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대로 소명하고 시정하라! *한국애견신문*.

의 생명 종결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안락사로 지칭하고자 한다.

제 2 절 동물 안락사의 실태

동물 안락사의 실태는 먼저, 우리나라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인 동물보호소에서의 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의 안락사에 있어 법령은 상세하게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 안락사를 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가 운영되는 방법은 법령에 제시되어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22조⁸⁾ ①항’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기재된 안락사 사유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는데 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첫째,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이다. 둘째,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 제21조⁹⁾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

8) 동물보호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9) 동물보호법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하는 경우이다.¹⁰⁾ 첫 번째 경우는 인간의 안락사와 같이 안락사를 당하는 동물의 고통을 고려한 경우이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동물의 입장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다. 동물 안락사는 이를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에 따라 생명의 존폐 유무가 달려있을 정도로 인간의 선택이 영향력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곳을 찾거나 위해를 끼치는 동물을 죽이는 선택이 동물과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고 선택한 것이다.

실험동물의 안락사 또한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 동물보호법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¹¹⁾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③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①항은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제시하며, 그 내용은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동물실험이 제23조¹²⁾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그리

1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본문4쪽 주석 참고.

11)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④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2)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이다. 이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시설에 개별적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제시한 위원회(IACUC)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¹³⁾ 즉, 안락사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진행될 수 있다(Underwood & Anthony, 2020: 60). 하지만 개별적인 위원회의 실험동물 안락사 기준을 살펴보면 실험동물의 안락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꼭 동물의 고통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한 동물실험 지침에 따르면 실험동물은 본래의 이용 목적에 따라 실험이 중지 혹은 종료되거나, 실험 처치, 부상 혹은 질병 등에 의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거나, 선발에 의해 실험에 사용되지 않거나, 노령으로 인해 번식군에서 퇴출되어 더 이상 번식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계속 사육을 할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이 예측될 경우, 그리고 화재나 지진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안락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고 제시한다.¹⁴⁾ 즉, 선발되지 않은 실험동물, 노령동물 등은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생명이 종결되는 것이다.

농장동물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¹⁵⁾ '살처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농림축산검역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동물실험 및/또는 실험동물 관련 위원회(IACUC)표준운영 가이드라인 2020개정 10쪽에 따른다.

14) 한양대학교 ERICA 실험동물센터 “실험동물 안락사 기준 및 방법” 1쪽 참고.

1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

분 명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축 전염병의 특정 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가축 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발병 농가로부터 최대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농가의 동물이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축 살처분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동물을 죽여 없애으로써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 일종의 예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가축 살처분을 진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가스를 먼저 주입하여 동물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의 지체를 막기 위해 일을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있는 동물을 땅에 묻거나 굴착기 등의 중장비로 짓눌러 죽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리하면, 농장동물의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가축 살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은 경제적인 이유로 생매장을 선택한다. 예컨대 2011년 구제역으로 300만 이상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처리되면서 이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대두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을 생매장함으로써 살처분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분을 자아냈다. 그 당시 진행된 살처분 방법은 '동물을 죽인 후에 매립'이 아닌 '산 채로 동물들을 매립'이었다. 즉, 살아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있는 동물들을 땅속에 묻는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했고 그 대상은 만삭이 된 임신한 돼지들, 태어난지 1주일도 안된 어린 새끼 돼지 등 살아있는 동물들이었다.¹⁶⁾

이외에도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의 안락사가 비교적 쉽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10년간 매해 약 70마리의 경주마가 안락사당하는데 대체로 골절과 건·인대 손상 등 운동기 질환이 그 사유였다. 상당수 경주마가 치료 후 승용마 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말 관리·복지체계가 열악해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상 등으로 은퇴한 경주마의 경우 현황 집계조차 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¹⁷⁾ 이렇듯 적법성을 넘어서 동물의 안락사는 논의될만하며 이는 추후 관련된 법령의 적법성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시의성이 있다.

다음으로, 안락사의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동물 안락사의 실태를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락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미국수의사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한 [AVMA guidelines for the euthanasia of animals]를 기준으로 두고 안락사 계획을 심의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안락사의 방법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윤리성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Rollin에 따르면, 모든 포유류 종의 안락사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은 진정제를 투여하고 카테터를 배치한 후 바르비투레이트 주사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인도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한번에 천마리의 쥐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제성이 떨어진다고(Rollin, 2009: 1084).

구체적인 안락사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아도 윤리성이 모호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Rollin에 의하면, 방법적 측면에서의 윤리성 문제를 가

16) 헬스코리아뉴스관리자. (2011, 1월 9일). 구제역 생매장 살처분 즉각 중단하고, 소, 돼지 백신 전국 접종하라! *헬스코리아*.

17) 노기섭. (2022년9월9일). 경주마 안락사 연평균 70마리…치료할 수 있는데도 안락사 당해. *문화일보*.

장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는 흉부압박이다. 흉부압박은 연구를 위해 새를 죽일 때 사용해오던 안락사 방법으로 불과 지난 버전(edition)의 AVMA guidelines for the euthanasia of animals(2007)에 따르면 ‘조건적으로 수용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이 안락사 방법은 저산소증과 심장마비를 적당히 빠르게 일으키며 작은 크기부터 중간크기의 새들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새의 흉통을 손으로 부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심장과 호흡기 기능에 물리적 방해가 일어나서 죽음을 야기한다. 이는 확실히 고통스럽고, 빠르지 않으며 인도적이지 않다. 덧붙여, 현재 양계업에서 많이 사용해온 질식사(Starvation)는 AVMA에서 불허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흉부압박이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은 동물 안락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흉부압박과 마찬가지로 감염된 동물이 있는 닭장의 닭들을 없애는 데에 AVMA에서 허용한 이산화탄소거품 또한 안락사 방법의 윤리적 정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예시이다. 닭장 안에 이산화탄소 거품을 뿌리게 되면 동물들은 거품에 덮임과 동시에 질식하게 되어 저산소증과 죽음에 이른다(Rollin, 2009: 1085).

AVMA 가이드라인의 가장 최신판인 2020년판에서 제시한 갓 태어난 돼지에게 활용되는 안락사 방법 중 윤리성을 논의할만한 것은 복부 안락사(ventral euthanasia)이다. 복부 안락사는 동물의 복부에 물질을 주입하여 호흡기와 심장의 정지를 야기한다. 어린 돼지에게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동적인 경추 탈구나 둔기에 의한 외상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이 활용된다. 하지만 이는 돼지에게 고통을 야기하며 안락사의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위와 같이 동물 안락사의 방법은 인간 안락사보다 윤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또, 안락사의 방법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선택권 중 동물들의 생명 존엄성보다 인간의 편의와 경제적인 실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 안락사는 인간 안락사에 비해 생명이 지닌 본래의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현실적 필요나 사회적 공익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박찬구, 2016: 172-173). 키우던 동물이 노쇠 또는 질병으로 인

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에 대한 치료나 돌봄 등의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 안락사가 경제적인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동물 안락사가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 동물의 생명이 도구적 가치로 전락한 경우이다.

농장동물의 안락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농장동물은 축산업의 일환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이들은 생산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번식되고, 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도살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장동물의 안락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선택일 수 있다.

실험동물의 안락사 또한 실험 종료 후 생존한 동물들이 다른 실험에 이용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부 동물들을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 이루어진다.¹⁸⁾ 상황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명을 유지했을 때보다 안락사를 했을 때의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동물원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있다. Cole과 Fraser에 따르면, 동물원을 운영할 때 동물들을 수집, 관리, 돌보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관람객이 필요한데 일부 동물들은 관람객 수익을 충당하기에는 인기가 적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번식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비용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경우, 동물원 관리자들은 이러한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Cole & Fraser, 2018: 49).

위와 같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동물 안락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하지만 도구적으로 동물 안락사를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에

18)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국제 동물실험윤리학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ICLAS)에서 발표한 “Guidelines for euthanasia of laboratory animals”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해 우리는 그 윤리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 3 장 동물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논의

앞 장에서는 동물 안락사의 개념과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동물 안락사를 논의할 때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누군가는 고통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삶을 종결하는 것, 즉 안락사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인도적인 죽음은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이렇듯 안락사에 대한 의견은 논의할만한 요소가 있으며 이는 동물 안락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동물 안락사의 논의점에 권리론적 접근과 공리주의적 접근, 즉 행위 중심 윤리학적 관점을 적용했을 때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 안락사는 인간 안락사와 다르게 안락사 당하는 대상의 진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공리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면 삶의 가치를 단순히 이익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동물들의 수많은 삶의 경험을 간과하게 된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권리론적으로 같은 논의점을 바라볼 때는, 동물 안락사의 적용 범위와 그 방법에 대한 한계가 발생한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제 1 절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에 논의하기에 앞서, 본 고에서 인간 안락사가 아닌 동물 안락사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들에 의하면 대다수 척추동물은 단순히 쾌락·고통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Rowlands에 따르면, 포유류, 조류는 물론 파충류에서 양서류까지 욕망과 선호의 감정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적어도 초보적인 수준의 실천적 추론을 할 수 있다. 덧붙여,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욕망과 실천적 추론 능력은 믿음 없이 가

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신이 원하는 먹이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먹이를 먹고 싶은 욕망은 아무 의미가 없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는 욕망과 믿음, 실천적 추론 능력의 소유자로서 소극적 의미의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이렇게 정신적 삶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발견이다(Rowlands, 2018: 55-56).

이렇듯 동물에게도 정신적인 삶이 있다는 사실은 동물 안락사의 과정에서 동물이 도구로서 이용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안락사의 실태에 따르면 동물의 안락사가 생각보다 안락하지 않으며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보아 동물의 안락사는 인간의 안락사와는 안락사 대상이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동물의 안락사는 위에서 살펴본 실태에 근거했을 때 논의 필요성이 있다. 동물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를 묻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안락사와 유사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자율성 유무의 차이로 인해 같다고 보긴 힘들다. 본 고의 논의를 위해 두 개념의 유사성보다 그 차이를 보는 것이 적합하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인간의 안락사는 안락사를 당하는 인간 이외의 인간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 동물의 안락사는 인간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동물 안락사의 논의는 삶의 질(quality)과 양(quantity)의 가치판단의 문제이다(Yeates, 2010: 70). 이에 따라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안락사의 대상 즉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일이 어렵다. 인간 안락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녹음·증언 등을 통해 살아생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박찬구, 2016: 172-173). 하지만 동물 안락사의 경우 동물들의 안락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동물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간이 대신 결정하고 시행하게 되며 인간이 결정하는 동물 안락사는 종종 동물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먼저, 안락사가 안락한 죽음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볼 때, 동물 안락사는 인간 안락사에 비해 안락하지 않은 죽음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물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의사소통이 인간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동물 안락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 안락사를 결정하는 인간들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갈등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물의 안락한 죽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한 생명에 대해 제3자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또는 더이상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박찬구, 2016: 173). Sandler에 따르면, 한 생명에 대해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판단은 윤리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 이는 생명체의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개념적인 가치에 대한 경각심을 반영한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 자체가 가진 다양한 특성과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역할은 다양한 생태계, 생명체 간 상호작용, 생명체의 자체적인 생명주기, 생명체가 경험하고 있는 삶 등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생명체는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와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일부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판단은 종종 문화, 시대, 지리적 맥락 등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들은 일부 생명체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생명체에 대해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다양한 특성과 역할, 생태계와의 상호작용, 생명체의 삶 등을 고려해야 한다(Sandler, 2012: 2).

예컨대 과거 우생학과 공리주의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사례가 있다. 1930년대에는 나치 지도자들이 우생학 이론을 기반으로 ‘순수하고 건강한’ 독일 인종을 보존하고자 한 유전학 연구를 위해 그들은 유전적 특성을 조사하고 인종이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실

험을 진행했다. 이러한 실험은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끝내거나 고통스러운 실험을 당했으며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생학과 공리주의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Friedlander, 1997: 371-373). 이런 사례로 미루어보아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집단의 우열에 대한 판단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는 생명체의 내재적인 가치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고려해야 하는 범위가 확장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동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동물들이 인간과 유사한 감정과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물들은 고통, 스트레스, 쾌락 등을 느끼며,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사실로 인간의 동물들의 삶과 생명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동물 학대와 같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동물보호와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법적 제도 또한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물 다양성의 유지와 보전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동물의 존재가 인간의 삶과 생태계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Bradley & Cardinale, 2012: 65). 이로 미루어보아 동물의 생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은 인간에 비해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생명의료윤리에 있어 도덕적 지위를 둘러싼 관심들 중 많은 것은 소위 ‘취약한 집단’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생명의료적 맥락에서 취약한 사람들은 질병, 쇠약함, 정신질환, 미성숙함, 인지 손상 등등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Beauchamp & Childress, 2017: 159). 이러한 맥락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집단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취약한 집단에 포함된다. 그들은 종종 관련된 권리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채, 잠재적으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의사결정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협박, 속임수, 기만, 착취에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취약한 계층들로 분류된다. 역사적으로, 많은 집단들이 연구 대상으로 ‘봉사’하도록 조작당했거나 기만당했고 생명의료윤리에서는 취약한 집단의 전형적인 예시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태아, 어린이, 정신적인 무능력자, 비인간적 기관에 기거하는 사람들, 실험실 동물들이 연구환경에서 취약한 집단이었고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남아있다. 이에 전례가 되는 사례는 안락사와 의료 연구에 대한 봉사라는 명분으로 수행된 나치의 말살 프로그램이다. 특정한 능력을 결여하는 인간들이 위험하고 가까운 미래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생명의료연구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데에는 보편적인 동의가 있다. 이런 취약한 집단의 보호는 그들의 취약성 때문에 강해야 한다. 비인간 동물들은 인간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그들의 제한된 인지적, 도덕적 능력들은 인간 연구 대상자가 윤리적으로 이용될 수 없을 때 생명의료연구에서 이용되는데 반대하는 정당화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 근거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유사하게 제한된 능력을 가진 인간들에게가 아니라 이러한 동물들에게 해와 조기죽음을 유발하면서 유사하게 제한된 능력을 지닌 인간들에게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가는 생명의료윤리에서 해결되지 않은 정합성 이슈이다(Beauchamp & Childress, 2017: 159-161). 이만큼 동물은 취약하다는 이유로 인간이 역사적으로 이용해왔고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취약성이 우리 사회 속에서 크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안락사 문제 또한 그들의 취약성 때문에 인간 안락사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과거에는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동물들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 왔지만 동물들은 고통, 스트레스, 쾌락 등을 느낀다는 것을 인간이 인식하기 시작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동물윤리의 확장은 생명중심적 가치관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동물은 인간과 더불어 거주하며 인간의 윤리, 책임, 의무의 범위 안에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의 생명을 종결하는 단계와 그전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을 물건처럼 대하며 비윤리적으로 대하는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이로 미루어보아 우리는 동물 안락사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동물 안락사에 대한 행위 중심 윤리학적 접근과 한계

앞의 1절에서 다룬 동물 안락사 논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데에 본 고에서는 공리주의, 권리론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공리주의와 권리론은 현행 도덕 교과뿐만 아니라 동물윤리를 다룰 때 가장 주가 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동물 안락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동물윤리를 광의적으로 살펴보겠다. 그 다음 공리주의와 권리론을 동물 안락사에 적용하고자 한다.

동물윤리를 다룰 때 동물의 ‘도덕적 지위’의 개념이 자주 사용되는데,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뜻이다(최훈, 2015: 19). 최훈에 따르면,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윤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묻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우리는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도덕적 지위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은 윤리적 대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최훈, 2019: 21).

동물윤리를 접근하는 관점은 이러한 ‘도덕적 지위’의 개념을 중심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는 동물이 지닌 도덕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는지,

직접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는 견해의 경우, 그 지위를 갖는 존재 자체에는 도덕적 의무를 지지 않고 그 존재가 영향을 끼치는 대상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닌다. 예컨대 데카르트는 동물은 기계이며 쾌락이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그저 시계의 경우와 동일한 원리의 지배를 받을 따름이다(Singer, 2012: 340). 이와 달리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보는 현대의 이론으로는 동물 해방을 주장하는 이론과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 동물 해방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적 접근과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론적 접근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공리주의적 접근

동물 해방론은 싱어가 공리주의를 동물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싱어에 따르면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을 제시하는데, 어떤 윤리적 판단을 할 때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최훈, 2019: 21). 그는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중 차별적인 태도가 아닌, 쾌락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즉 쾌고감수능력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한다.

동물해방론은 인간에 대해 합의된 도덕관념으로부터 출발해서 동물에 대한 윤리적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동물권리론과 비슷하다. 공리주의자들, 특히 피터싱어에 의해 체계화된 동물 해방론은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비판하는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종차별주의도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종차별주의(speciesism)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고,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육식, 동물실험, 동물원, 사냥, 서커스, 로데오 모피 산업 등이 종차별주의의 대표적인 관행들이다. 백인과 흑인을 비교할 때는 집단으로 다루면 인종차별주의에 빠지므로, 개인으로 다루어야 하며, 인

간과 영장류를 비교할 때는 집단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싱어의 주장이다. 이것이 그가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하는 원리를 종차별주의에 적용하는 방식이다(최훈, 2015: 52-54). 그는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를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윤리적 판단을 할 때, 인간은 개인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한다(Singer, 2012: 43). 이는 동일한 이익에 대해 동일한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싱어는 동물 역시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이 원칙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자는 이익은 고통을 피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며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기준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판단한다. 즉, 이익을 갖기 위하여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평등하게 배려받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익을 갖는 존재인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평등 개념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는 동물과 인간을 똑같이 대우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동등한 대우’가 아닌 ‘동등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싱어는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또한 해당하며 ‘이익을 가지는 동물’ 역시 평등의 고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류기련, 2020: 15-16).

동물 안락사 논의를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한다. 첫째, 동물 안락사는 동물과 인간의 이익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익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공리주의 윤리학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은 동물 안락사를 수행할 때에도,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상충할 때, 공리주의적 접근에 따른 선택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동물

안락사의 범위에 있는 특정 행위가 이익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 동물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인간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으며 총체적인 이익은 이 행위를 시행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다면,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특정 행위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공리주의적으로 바람직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과 인간의 이익은 비교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공리주의적 접근에서는 다수의 이익과 손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물의 이익과 손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것을 평가하는 것과 다르다. 비인간 동물은 인간과는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과 손실과는 다르게 평가된다. 특히 동물의 이익은 인간이 유추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둘째, 동물 안락사 논의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다. 특히, 이 주제는 동물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감정과 이성의 조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공리주의적 윤리학은 일반적으로 쾌락과 고통, 이익과 손실에 기반한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이는 동물 안락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동물 안락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을 손해로 인식할 수도 있고 이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공리주의적 접근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가치관에 기반한 논의를 할 때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가령, 동물을 수단으로서 대하는 사람들은 동물의 이익보다 인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반면 동물의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잘못된 가치관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동물 안락사에 대해 자비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폭력적인 영화나 다른 것들의 확산으로 인해 폭력에 점점 더 둔감해진다고 가정하고 그들은 일반적인 스포츠, 가령 복싱, 럭비, 하키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같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가정해보겠다. 그들은 더 폭력적인 것을 필

요로 할 것이며 이런 성향은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Rowlands, 1988: 44). 이때, 오락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합리화된다면, 동물은 그 사회에서 수단으로 인식되는 대상이라는 분위기가 더 강해질 것이며 결국 동물의 안락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 동물의 고통은 더 이상 고려 요소가 아닌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안락사는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난 생명은 충분히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장애가 있는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명을 또 낳을 수 있으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생명을 죽이자고 제안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김성동, 2018: 148-149). 공리주의가 함의하는 바인 ‘지각 능력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동등한 무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은 그만큼 우리가 간과하던 생명체를 고려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이러한 고통을 종결시켜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동물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그들의 생명력 이외에도 그들의 삶이 내포하고 있는 것들은 많다. 예컨대 그들 또한 인간과 같이 존엄성, 사회적 능력, 호기심, 놀이, 계획, 그리고 다른 개체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 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번영은 단순히 고통과 쾌락으로만 판별할 수 있는 만족의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수많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도 판별할 수 있다(Nussbaum, 2023: 56). 이렇듯 공리주의적으로 동물의 안락사를 바라볼 때, 삶의 가치를 단순히 이익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동물들의 수많은 삶의 경험을 간과할 수도 있다.

2. 권리론적 접근

동물권리론은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견해를 리건이 동물에까지 확장한 이론이다. 리건은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서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이익과 삶의 질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gan, 2004: 82-83). 그에 따르면 동물 또한 인간과 같이 내재적 가치를 소유하는데, 경험의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비교하는데 경험의 가치는 존재가 경험으로부터 얻는 기쁨, 선호 등의 가치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리건은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동일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동물권리론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칸트의 용어로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의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모든 인간이 삶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이유는 모든 인간의 동등한 내재적 가치 때문이다. 칸트의 ‘내재적 가치’ 개념은 모든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리건은 왜 인간에만 이 개념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인간에게는 이성, 말할 수 있는 능력, 자유 의지 능력, 동일성 개념 소유 능력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없는 인간, 곧 가장자리(marginal)인간도 있으며, 인간 아닌 존재 중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답은 내재적 가치를 인간에게만 부여한다는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리건은 생명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에 담긴 뜻을 다음과 같이 풀어낸다. 첫째, 모든 인간은 욕구, 목표, 희망, 선호 등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인 이해·관심을 갖는데, 이것의 만족이나 실현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생명에 내재적 가치를 만들어 낸다. 둘째, 욕구의 만족이나 목표의 실현에 의해 어떤 사람의 생명에 만들어진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 판단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것과 똑같이 좋다. 만약 그렇다면 긍정적인 이해·관심을 갖는 어떤 존재가 그 이해·관심이 만족되었을 때 다른 개체의 이해·관심만큼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만들어 낸다면, 생명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가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물도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생명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일관성 또는 공정함은 모든 이론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리건은 원래 인간에게만 적용되었던 ‘내재적 가치’ 개념을 동물에게까지 확장하기 위해 ‘본래적 가치’라는 개념으로 바꾼다. 그에 따르면 본래적 가치(inherent value)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본래적 가치는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이다. 본래적 가치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며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서 가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말한다. 리건이 보기에 인간이 그런 본래적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까닭은 인간이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 중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 가령 갓난아이나 정신장애자 등이 많이 있지만 그런 존재를 제외한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갖는 성질은 삶을 누리고 있다(최훈, 2015: 31-42). 리건은 이를 바탕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또한 각자의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정리하면, 리건은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며 인간이 아닌 포유동물 중 성장한 생명체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감정적인 생활을 하며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론적 입장에서 동물 안락사를 접근했을 때 세 가지 한계점이 발생한다.

먼저, 동물 안락사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한계이다. 권리론에서는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권리의 적용 범위가 결정되는데 동물 안락사를 적용할 때 어떤 종의 동물이 대상이 될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그다음, 동물 안락사의 적용 방법의 한계가 있다. 동물 안락사는 인간이 동물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의 생명권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할 경우, 아직까지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과 규칙의

재설정은 물론이며 이 과정에서 동물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그들을 위하여 행해지는 행위조차 실행하기 어려워진다.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고통을 받고 있어도 그들의 안락사를 인간이 선불리 결정내려줄 수 없게 된다. 또한, 같은 원리로 그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워진다. 이렇듯 권리론적으로 동물 안락사를 시행하면 현실적으로 적용하였을 때의 어려움이 있다.

3. 종합적 검토

위에서 제시한 동물복지론은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반면 동물권리론은 사람과 동물을 수평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이 두 이론의 대립이 도덕 교과에서 동물 윤리를 소개할 때 제시되며 지배적인 동물 윤리 이론이다. 이 두 이론은 서로 다른 근거에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그때 사용하는 방법론은 비슷하다. 이들은 먼저 사람들에게 도덕적 지위가 평등하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당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진술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인간이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에게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거론할 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평등하게 갖는다는 전제에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가정하고 출발한다. 이때, 이 두 이론은 인간에 대해 어떤 도덕적 결론을 합의한다면 그것은 동물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서로를 대할 때 성별, 인종,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훈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어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론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최훈, 2015: 39-40).

하지만 싱어와 리건의 동물윤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동물들에게 도덕적 지위 부여 속성에 따라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리주의나 의무론 진영에 속하는 규칙중심적 윤리를 견지하는 데 있다. 이토록 복잡한 세상의 모든 일을 단순한 원리나 법칙 혹은 규칙으로 규제할 수 없듯이 이런 식의 동물 윤리가 함의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행태를 그것으로 모두 통제할 수 없다(김완구, 2017: 39-40).

윤리학의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대표적으로 제시된 이론인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주의는 우리의 행위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우리의 도덕적 삶이나 행위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론 중 어떠한 이론이 올바른지 그리고 그것들을 현실적인 실천에 적용할 때 문제는 없는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론 중 어떤 것도 도덕에 관해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단일한 최선의 방식을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김완구, 2017: 28). 행위가 꼭 도덕적 규칙들과 원칙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김완구, 2017: 30).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 규칙 중심의 윤리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덕윤리로 동물 안락사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 4 장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

3장에서는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점과 그것을 행위 중심 윤리학적 으로 바라봤을 때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규범윤리학중 덕윤 리로 같은 논의점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덕윤리는 어떠한 행동이 우리를 보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가를 고민하는 관점이다. 이때, 안락사를 시행하는 기술자는 물론, 동물 안락사와 관련된 모든 인간은 안락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윤리적인 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통을 받는 동물의 삶을 종결해주는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들의 고통의 감소를 지향하며 삶을 증진하려는 윤리적인 덕을 갖추는 것이 안락사 대상 동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도의를 지키는 것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덕윤리는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 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덕윤리의 개념을 제시한 뒤, 덕과 품성의 개념을 소개한다. 그 다음, 덕윤리가 동물 안락사 논의에 적합한 이유를 논의한 뒤, 구체적으로 어떠한 덕이 적용 가능한지 소개하고자 한다.

제 1 절 동물 안락사와 덕윤리

1. 덕윤리의 의미와 특성

덕윤리의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덕윤리의 핵심 개념은 덕이다. 덕은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혀있는 성격적 특성이다. 성격적 특성이 뿌리박혀있다는 것은 개인이 행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 행위이다. 예컨대 정직이라는 덕목을 갖췄다면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훔치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

인이 분실한 물건을 되찾아주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직의 덕목은 단순히 정직한 행위를 하는 경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정직하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분노를 느끼며 개탄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덕은 행동의 연속성을 지녀야 하며 이러한 안정적인 행위는 이성과 감정의 상황적 문맥이 적절해야 한다.

또한, Rowlands에 따르면, 덕을 소유한다는 것은 상황에 알맞은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맞는 판단, 감정, 생각을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직의 덕목을 예시로 들었을 때,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멀리하고 정직한 행동을 안정적으로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정직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두려워서 그러한 정직한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정직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정직하지 않음을 멀리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맞는 판단, 감정,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정직이라는 덕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보아 덕이란, 좋고 지향할만한 성격적 특성이며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행위를 해야 하고 그 행위는 상황에 적절한 이성과 감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Rowlands, 2009: 99).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봤을 때, 덕스러운 사람은 용기, 친절, 정직, 정의, 자비, 신의, 근면, 이타성, 자애, 동정, 책임, 인테그리티, 지혜로움 등의 덕을 지니고 그에 따라 행하며 판단, 감정, 생각을 상황에 알맞게 하는 사람이다. 덕을 지니고 행위하는 사람은 그와 상반된 악덕을 지니고 행위하는 것을 배제한다. 덕윤리에 따르면, 덕을 지닌 사람은 덕스럽게 행위한다(Rowlands, 2009: 100). 덕윤리의 핵심 개념은 덕이며, 덕은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혀있는 성격적 특성이다. 덕윤리에 따른 근본적인 도덕 규범은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Salkever에 따르면, 원칙을 중요시하는 규범 윤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Which action should we do)?’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가치를 중

요시하는 덕 윤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How should we live)?’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에 따라 행위를 평가하는 공리주의나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행해졌는가를 보는 의무주의 둘 다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행위 중심 도덕(act morality)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덕 윤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행위자 중심 도덕(agent morality)이라고 분류되기도 한다(Salkever, 1990: 108).

덕 윤리는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개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한다. 이런 점에서 덕 윤리는 개별 행위의 평가가 그것을 행한 행위자와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가 갖는 유익함이나 행위의 동기가 올바른 의무원칙에 따랐는가에 따라 평가하는 규범 윤리와 달리 덕 윤리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Oakley, 2013: 86-97). 이뿐만 아니라 덕을 갖춘 사람을 바람직한 행위의 기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덕 윤리는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도덕적 물음에 대한 공식적인 해답이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바로 공식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도덕적 가치와 의의를 찾는다. 단순히 규율을 따라 지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성적인 선택에 따라 주체적 판단과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답한다. 올바른 행위 혹은 가치 있는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며 인간의 도덕적 삶이란 올바른 추론과 정당화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 행동을 통해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고 한다(김수정, 2009: 136). 덕윤리는 인간에게 좋은 삶이란 인간의 필요와 욕구 및 가능성을 실현하고(fulfill) 번영(flourish)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본다. 덧붙여, 인간의 본질과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논하고 그에 부

합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하고자 한다(김수정, 2009: 137).

이를 바탕으로 덕윤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 중심의 도덕이다. 덕윤리적 접근에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윤리의 근본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을 가진다. 도덕적으로 권유할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성향, 자질 또는 습관 등의 특성을 중시하는 덕윤리는 연민, 양심적임, 진실됨과 같은 사람의 도덕적 품성 측면에 일차적인 강조점을 두는 윤리이다. 이는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강조함으로써 좋은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이다.

둘째, 실천을 강조한다. 진실이나 용기, 정의 등을 포함한 덕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이 그러한 실천의 범위에 내재적인 선을 성취하는 것에 요구되는 본질적인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민호에 따르면, ‘정직’이나 ‘용기’ 없이도 사람들은 사회의 제도가 실천에 부착하고 있는 어떤 외적 선을 얻는 데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내적 선을 향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예컨대 속임수로 상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적 선을 향유하기란 불가능하다(송민호, 2004: 53).

셋째, 도덕적 의무의 영역이 끝나는 곳에서 도덕적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도덕의 영역을 확대, 보완할 수 있다. 송민호는 현대사회에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어온 의무윤리는 도덕과 관련된 행위를 의무 혹은 책무로서 요구되는 행위, 금지된 행위, 의무적이거나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무관한 허용된 행위로 나뉜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의무윤리는 도덕 생활의 다양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의무를 넘어서 마땅히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보여지는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데 덕윤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송민호, 2004: 54).

넷째, 상황 맥락적 고려가 가능하다. 덕윤리는 언제나 같은 규율을 적

용하기보다는 각 윤리적 상황의 문맥을 고려하며 윤리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이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덕스러운 행위도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덕윤리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의 덕윤리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덕윤리는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지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덕윤리는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을 지향한다. 덕윤리는 덕스러운 품성에 따른 행위를 통해 번영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인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과 넓게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번영을 지향한다.

2. 덕 개념

덕은 하나의 성품의 상태, 즉 바르게 선택하려는 하나의 고정된 성향이다(김종용, 2019: 315). Beauchamp과 Childress에 따르면, 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성품의 특성이고 도덕적 덕이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성품의 특성이다. 사회 집단들이 어떤 특성을 승인하고 그 특성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은 그 특성을 도덕적 덕이라고 규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몇몇 공동체는 유덕한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몇몇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지닌 비열함과 인색함과 같은 악덕들 때문에 그들을 칭찬한다. 그래서 도덕적 덕이란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특성 이상의 것이다(Beauchamp & Childress, 2017: 56-57).

덕(virtue)은 그리스어 arete에서 왔으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함(excellence), 혹은 탁월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구두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탁월함,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탁월함, 바이올린을 켜는 데 있어서 탁월함,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탁월함, 달리기에서의 탁월함 등과 같이 후천적으로 얻게 된 기술에 대해서 훌륭함을 말할 수 있다. 이런 후천적 기술에 대해서 훌륭함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기술 행위가 지향하는 목적, 선이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행위에서 덕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덕은 단순한 감정(pathos)도 아니고

능력도(dunamis, ability) 아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사람이 덕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순한 사실로서의 능력과 감정은 우리가 이전에 선택한 결과로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이나 비난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훌륭함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실천적인 덕을 논하는 데 있어서 행위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무리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있더라도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 나와서 겨루지 않는다면 훌륭하다고 평가받기 힘들 것이다.

덕은 습관을 통해서 얻게 된 성향으로서 감정과 성향을 통해서 구현된다. 김수정에 따르면, 부정의가 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며 화를 지나치게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성미가 급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실천적 영역에서 덕은 우리 이성에 의해서 중간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인데, 이는 바로 유덕한 사람에게서 구현되므로 유덕한 사람이 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정, 2009: 135).

덕윤리에서 옳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1: 만일 X가 유덕한 행위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하게 되는 행위라면, x는 옳은 행위이다¹⁹⁾

이 전제는 두명의 유덕한 행위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산소공급의 중단을 선

19) 이 전제는 두 명의 유덕한 행위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산소공급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계속 공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계속 공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행위도 그 자체로 유일한 옳은 행위가 아님을 나타낸다. 두 행위 모두 옳을 수 있다(Hursthouse, 2006: 57-75).

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계속 공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행위도 그 자체로 유일한 옳은 행위가 아님을 나타낸다. 두 행위 모두 옳을 수 있다(Hursthouse, 2006: 57-75). 이 정의는 옳은 행위의 개념은 유덕한 행위자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덕한 행위자라는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의2: 만일 X가 덕스럽게 행위한다면, 즉 X가 덕을 소유하고 행사한다면, X는 유덕한 행위자이다.

이 정의는 덕 윤리가 덕의 개념을 통해서 유덕한 행위자를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정의도 덕에 관한 개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덕윤리에서 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3: 만일 X가 인간이 번영하기 위해, 즉 잘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품성의 특성이라면 X는 덕이다.

김요한에 따르면, 이 정의는 덕의 개념을 번영(잘사는 것 또는 행복)의 개념과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들에 관련된 대답들은 행위자의 결정과 실천이 번영, 행복, 좋음과 같은 원리들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덕윤리에서는 행위자가 ‘만일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나는 정의롭게 행위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그 두 가지 모두 아닌지’라고 자문할 것을 요구한다. 행위자는 무엇을 행위 해야 할 것인지 가상적으로 상상하기보다 자신의 덕과 악덕에 관한 개념들을 곧바로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김요한, 2004: 260-262).

덕은 실천하여 얻을 수 있다. 악기를 연주해야 연주가 될 수 있으며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올바르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가 있게 된다. 품성의 차이는 그 품성에 해당하는 행동들로 생기기 때문

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이 좋은 성질의 행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 행동의 차이에 따라 우리의 품성이 달라지게 된다(Aristotle, 2015: 46-47).

3. 덕과 품성의 관계

덕윤리에 따르면, 도덕성을 평가하고, 연마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행위가 아닌 품성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으로 도덕적이라는 것은 단 한번의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주선희, 2018: 7).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덕은 정신(영혼)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감정(정념), 능력, 품성(성품)이 있으므로 덕은 이 셋 중 하나이다. 감정(정념)은 욕망, 분노, 공포, 태연함, 질투, 환희, 사랑, 친애, 증오 동경, 경쟁심, 연민 등 쾌락과 고통을 수반하는 감정들이다. 능력이란, 그것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감수성이다. 가령, 우리가 노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능력들이다. 품성(성품)은 감정에 대해 잘 처신하거나 잘못 처신하게 해주는 것이다. 즉, 감정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분노와 관련하여 우리가 너무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지나치게 둔감하다면 잘못 처신하고 있는 것이므로 품성이 좋지 않은 것이고, 적절하게 느끼고 있다면 좋은 품성을 가진 것이다(Aristotle, 2015: 54).

감정은 덕이나 악덕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덕이나 악덕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 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지 않으며 우리의 덕이나 악덕 때문에 칭찬이나 비난을 받는다. 또한, 덕은 능력도 아니다. 우리가 노여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감정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선택은 덕과 관련이 있다. 흔히 감정에 관하여 말할 때는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덕에 관하여 말할 때는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고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덕은 마음의 능력도 아니며 이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선하거나 악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며 칭찬이나 비난을 받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본성에 의한 것이지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덕이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면, 덕은 결국 품성(성품)일 수밖에 없다 (Aristotle, 2015: 54-55). 이러한 탁월한 성품의 예시로 용기, 절제, 온화함, 자유로움, 진실함 등이 있다(유원기, 2009: 38).

덕윤리학이 생각하는 윤리학의 본질은 ‘행위자가 덕스러운 품성을 가지고 이를 현실에서 얼마나 도덕적 행위들을 실천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즉, 도덕적 덕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이다(장정아, 2022: 2397). 덕윤리학은 구체적 갈등 상황에 처한 행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의 성품에 관심을 가지며 성품적 덕을 갖춘 행위자의 덕스러운 품성 상태를 중시하는 것이다(장정아, 2022: 2398).

제 2 절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의 옹호

1. 동물 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시사점

도덕 원칙들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많은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적용되곤 한다. 도덕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개별 사례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구체적 행위나 정책의 평가 기준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김수정에 따르면, 표준서나 지침서 개발을 중요시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 중심주의 접근 방식은 도덕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지침대로 행위하는 ‘자동인간’을 양산할 수도 있다. 행위 지침과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원칙들은 단순명료하고 보편타당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개별

사례가 처한 구체적인 맥락, 관련된 행위자들의 믿음과 가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등 다양한 사항들을 무시하게 만든다(김수정, 2009: 135).

법칙적인 윤리개념하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말도록 구속하는 일련의 단순한 법칙 같은 원칙들로 간주된다(노영란, 2009: 17). 그래서 이런 방식의 윤리에서는 법칙으로서의 도덕이 행위나 규칙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 내릴 수는 있겠지만, 믿을 수 없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는 등의 판단을 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김완구&심세훈, 2020: 49).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점에 있어 앞서 1절에서 제시한 공리주의적 접근과 권리론적 접근과 다르게, 덕윤리적 접근은 어떤 행동이 우리를 보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지를 고민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적용하기 적합하다. 왜냐하면 덕윤리는 개인의 성격과 인격을 발전시키며 도덕적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윤리적인 행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받는 동물의 삶을 종결해주는 문제를 논할 때, 이를 단순히 기술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들의 고통의 감소를 지향하며 삶을 증진 시키려는 윤리적인 덕을 갖추는 것이 안락사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도의를 지키는 것에 가까워진다. 동물을 존중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안은 규칙의 문제로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동물 생명에 대해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태도,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태도의 문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모든 인간의 행위가 그렇겠지만 동물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있어 우리는 단순히 규칙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동물 안락사에 대한 논의 또한, 동물을 존중하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김완구와 심세훈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논의는 규칙 중심적 윤리가 아니라 성품의 윤리, 즉 덕 윤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동물 윤리에 대한 행위

규칙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도덕적 품성에 관한 관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김완구&심세훈, 2020: 39-40).

허스트하우스와 같은 덕 윤리학자는 공리주의나 칸트의 윤리와 같은 서양의 대표적인 윤리이론들이 동물 윤리와 관련된 실천에 있어서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에 접근하는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허스트하우스는 대부분 사람이 낙태 논쟁에서 태아의 도덕적 지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동물과 환경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한 결과론적이며 의무론적인 접근 방식들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지적한다(Hursthouse, 2006 136-137).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처음으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다른 동물들의 도덕적 지위가 무엇인가”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공리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실어는 ‘유정성’을 가진 것들이 그리고 리건은 고유의 가치 부여 속성을 갖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삶의 주체들’이 그런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런 대상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하거나 그 자체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들이 이렇게 도덕적 지위를 고려한 이유는 특정 집단을 대할 때 어떤 도덕 규칙이나 원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 동물이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알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허스트하우스는 덕 윤리학자들은 규범 윤리학이 그런 도덕적 원리들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실천적인 윤리적 사유는 덕의 윤리를 통해서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한다(Hursthouse, 2006: 137). 그래서 허스트하우스는 동물 윤리를 다룰 때 덕 윤리는 사례별로 다루는 접근 방식을 가지기에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물음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 공리주의나 칸트의 윤리와 같은 서양의 대표적인 윤리이론들의 접근 방식이 강요했던 이런 쟁점에 대한 사유의 틀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이다(Hursthouse, 2006: 136). 다른 동물에 대한 우리의 대우라는 윤리학의 맥락에서 그것은 전혀 쓸모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이라는 한 개의

집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들, 동물원 동물들, 우리가 도축하여 먹는 동물들, 실험동물들 등 수없이 많은 집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스트하우스는 동물들과 관련된 옳고 그른 행위에 관한 질문들은 폭넓고 다양한 맥락들에서 발생하는데 그런 지위를 일괄적이고 전면적으로 부여하여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한다(Hursthouse, 2006: 140-141).

덧붙여, 동물 안락사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생명중심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진 슈바이처는 생명외경과 같은 사상을 윤리적 '규칙(rule)'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attitude)'로 제안했다. 이 때문에 윤리적 관심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넘어간다. 이는 바로 '생명존중'은 규칙에 대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윤리' 혹은 '덕의 윤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완구, 2017: 25-26). 이러한 측면에서 안락사는 행위 중심 윤리학과 행위자 중심 윤리학 중 행위자 중심 윤리학과 연관성이 있다. 김완구에 따르면, 생명윤리 동물 윤리 등은 생태적 감수성 등과 같은 태도나 품성에 호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태적 감수성이나 생태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우리는 행동에 관해서는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품성이나 성격 등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생태적 감수성이 없다고 법정에 불러가지 않는다(김완구, 2017: 33).

허스트하우스는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로 다른 생명체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행동을 하며 동시에 그 행위의 대상에게 연민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 연민과 같은 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완화하려고 하는 연민을 가진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민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연민을 다른 생명체에게 느낀다는 것은, 그 대상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불편함과 반발심을 느끼는 것이다. 가령 공장식 축산으로 육식이 가능한 이유는 비인간 동물이 상당

한 고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우리는 고기를 섭취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에 마땅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즉, 연민이라는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느껴야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위 사례에 대한 덕윤리의 핵심은 연민을 가진 개인은 동물의 고통을 봤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사소한 이익을 얻는 것 행위에 대해 부적절함을 느끼는 것이다(Abbate, 2014: 924). 덕스러운 사람은, 덕스러운 행위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엄성우, 2010: 133). 이로 미루어보아 위의 사례처럼 공장식 축산으로 육식을 하는 것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연민을 느끼고 육식을 멈추고자 한다는 덕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과정을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여 그사람이 덕스럽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덕스러움은 덕스러운 행위를 할 때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한 여부나 그 순간에 내적 갈등을 느끼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내적 갈등 없이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 덜 덕스러울 수도 있다(엄성우, 2010: 145).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보다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덕스러움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과정을 고통스러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좋은 사람과 좋은 삶을 지향한다면, 덕스럽다고 할 수 있다(엄성우, 2021: 18). 따라서, 동물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동물을 위한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덕스러운 행위에 대해 적절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덕윤리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행위자의 성품의 역할을 강조하며 좋은 성격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권리나 의무보다 행위의 문맥을 고려하며 행위자의 관점과 감정을 중시한다. 더 나아가 다른 존재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논할 때, 덕윤리는 대상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물음보다 행위자의 덕적 품성의 발달과 그것을 유지하

는 데 집중한다(Walker, 2019: 416). 이로 미루어보아 덕윤리는 동물을 대할 때 동물이 어떤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거나 그들의 도덕적 상태가 무엇인가보다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할지에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동물윤리는 이미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근거한 윤리적인 틀이 잡혀있으며 이는 동물에 대한 정책과 규제와도 연관이 있다. 하지만 덕윤리는 이와 다르게 복지의 문제를 넘어서 동물의 좋은 삶의 증진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Walker, 2019: 416-417). 사람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으로 덕은 연민, 친절, 자비, 충성이 있고 이는 동물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용기, 정의와 같은 덕은 적합한 상황에서의 동물에 대한 대우와 연관이 있다(Walker, 2019: 417-418).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이 잘 사는 것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덕스럽게 동물을 대하는 것도 이러한 덕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허스트하우스 이외에도 덕윤리적 관점으로 동물윤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누스바움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차가운 이성으로 계산을 하고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문제 해결법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동요 없이 이성에 근거하여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덕스러운, 좋은 사람은 상황의 비극성을 인지하고 악임을 알아차린다고 한다. 이를 동물윤리에 적용해보면, 육식, 동물실험 등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이 허용이 되더라도, 그것의 비극성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덕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Schinkel, 2008: 59).

덧붙여, 동물윤리에 덕윤리를 적용하는 것이 자칫해서 동물을 위한 행동이 아닌 덕스러운 인간이 되기 위한 행동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 하지만 본 고의 논의는 덕스러운 성품을 발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수단으로써 동물윤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덕윤리는 인간의 번영을 지향한다. 이때, 번영을 지향하는 것은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신의 번영을 위해 다른 존재를 이용하여 이기적으로 행

동하는 것이 아니다(Annas, 2008: 220). 즉, 덕스러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덕윤리에서 제시하는 변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덕윤리를 동물윤리에 적용할 때, 인간중심주의의 연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덕윤리에 따르면 변영을 위하여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를 동물윤리에 적용하면, 덕스러운 사람은 동물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에게 덕스럽게 대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덕스러운 성품을 발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 덕스러운 품성을 갖추므로써 동물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보고 행위할 수 있도록 함에 본 고는 초점을 맞춘다.

2.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시사점

아직까지 덕윤리를 동물윤리에의 적용했을 때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그중 구체적으로 ‘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논의에 대해 덕윤리적 접근을 옹호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 안락사는 안락사의 대상과 안락사의 결정권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입장에서 안락사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덕윤리가 적합하다. 동물 안락사는 인간의 안락사와 비교했을 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안락사 즉 비자발적 안락사와 유사하다. 비자발적 안락사를 진행할 때 환자의 사전 지시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하지만 동물의 안락사는 동물이 자신의 안락사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지시를 할 수 없으며 안락사 당하는 동물과 가장 인접한 인간이 안락사 관련 의사결정을 한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대신해서 생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인간이 동물의 안락사를 대신 결정할 때,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보다 동물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하는 품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의 주인은 물론, 살처분되는 농장 동물, 유기 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안락사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수의·보건의료 전문인들, 그리고 관련된 기관윤리위원회 등이 동물의 안락사를 결정할 것이므로 그들이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덕을 갖추어서 안락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물 안락사는 한 생명의 마지막 경험이므로 안락사당하는 생명체가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안락사와 관련된 인간의 품성이 중시된다. 동물 안락사는 동물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락사당하는 동물이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안락사 당하는 동물의 보호자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것 또한 안락사를 직접 기술하는 사람의 품성과 연관이 있다.

의술은 건강의 회복, 증진, 유지를 지향한다. 플라톤은 의사가 가진 기예의 기능은 건강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이 의술의 기능과 목적과 선이라고 주장한다. 두 철학자에게 건강은 선이고 질병은 악이라는 점은 공리나 다름없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치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 심사숙고하지 않으며 단지 건강이라는 이미 설정된 목적에 따라 어떻게, 즉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한다(김요한, 2004: 263). 크로스와 워즐리에 따르면 의사가 안락사를 위해 자신의 의술 기예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안락사를 방지하는 다른 기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적합한 윤리적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김요한, 2004: 264-265). 훌륭한 의사는 고통의 감소를 지향하면서 삶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는 선, 즉 고통의 경감을 통한 삶의 증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술의 본질적인 목적 안에 머물러있다(김요한, 2004: 266). 안락사와 관련된 의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 중에 ‘때로는 무익한 삶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의사 개인의 전문 기술의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기술적인 의학지식의 밖에 있는 삶 전체에 관련된 이해, 즉 선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에게 호소해야 함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제안한다(김요한,

2004: 270).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술의 일부라는 점과 동물들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동물 안락사 시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선’을 고려하여 그들의 복지와 안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물의 안락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덕스러운 사람은 안락사 대상의 삶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도가 높다.

셋째, 동물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그들은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생명 종결 단계를 존중하고 책임져야 한다.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는 그와 관련된 도덕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고려하여 그들의 안락사가 공리적으로 갖는 의미나 그들이 어떠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인간이 그들을 위해서 책임을 갖고 어떠한 품성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덕스러운 사람은 안락사를 당하는 동물에게 친애, 자비 등의 덕을 갖고 그들을 대할 것이다. 이는 연민을 느끼고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덕윤리와 동물 안락사와의 접점이 생긴다.

넷째,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논의의 핵심이 되는 동물 안락사의 논의점에 대해 다른 윤리에 비해 덕윤리가 적절한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의무론은 자율성에 근거하여 동물에까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공리주의는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을 다루더라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논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동물 안락사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 본 고 2장에서 제시한 실태와 같이 동물의 입장보다 인간의 실익을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동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고 동물 안락사라는 수단으로 그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때, 동물은 안락사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삶이 종결된다. 이러한 공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담론으로 친애, 자비 등과 같은 덕적 품성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덕윤리가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덕윤리를 통해 동물이 안락사되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다. 덕윤리는 윤리적인 담론에서 맥락과 상황적 요소를 강조한다. 따라서 덕스러운 사람은 동물의 안락사에 한가지 법칙과 규율을 적용하기보다 상황별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판단을 한다. 동물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그들을 안락사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덕에 근거한 안락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동물이 도구적으로 안락사 되는 상황을 예방하게 될 수도 있으며 생명을 헛되게 종결하지 않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제 3 절 동물 안락사 논의에 필요한 덕

사람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덕으로 연민, 친절, 자비, 충성이 있고 이는 동물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용기, 정의와 같은 덕은 동물에 대한 대우와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다(Walker, 2019: 417-418). 본고는 자비와 친애의 덕을 각각 동물의 안락사의 논의점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품성적 덕을 동물윤리, 더 나아가 동물 안락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다양한 품성적 덕 중 예시로 자비와 친애의 덕을 어떠한 점에서 동물 안락사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시사점에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 안락사는 동물이 받는 고통이 극심하여 생명의 지속보다 종결이 더욱 안락할 때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그들의 이용 가치가 없어졌을 때도 있다. 먼저, 동물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그들이 질병, 사고 등으로 고통을 얻거나 인간의 유희, 연구 등을 위해 동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고통을 얻는 사례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동물의 이용 가치가 없어졌을 때는 동물이 고통을 얻지 않게 되더라도 안락사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동물이 질병, 사고 등으로 고통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 안락사는 동물의 입장에서 적합하지 않은 대우라고 볼 수 있다. 동물의 생명을 종결하는 체계의 과정에서 인간은 이득을 얻는다(Beauchamp & Childress, 2017: 162-163). 동물을 활용하여 이득을

얻고 그들을 도구로 활용한 뒤, 생명을 종결시키는 과정의 주체는 모두 인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원됐던 동물들인 만큼 더더욱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자비라는 덕목을, 그들의 고통과 상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친애의 덕을 근거로 동물의 안락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자비(mercy)

자비란 의도적으로 도덕적인 이유 혹은 이성적인 이유에 의해 다른 대상을 더 배려하며 대하는 것이다. 즉, 자비롭다는 것은 누군가를 대할 때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보다 더 배려하는 것이다. 자비는 선의의 개념과(benevolence)는 차이가 있다. 자비는 연민 또는 용서를 보이는 대상이 보통 잘못을 했거나 자비를 베푸는 주체보다 연약한 존재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선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대상을 더 좋은 상태로 바꾸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비는 연민과도 차이가 있다. 연민은 다른 대상이 고통받는 것이 완화되길 바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자비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측면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대상을 배려하고 도우며 덜 나쁜 상황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비는 원칙에 근거하여 요구할 만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행위 하는 것이 아닌, 타자가 애원하거나 청원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다(Ferkany, 2011: 267). 따라서 자비는 타인을 돕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며 봉사를 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자비는 상대에게 빚지지 않았으며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의 자의로 행하는 것이다(O'Driscoll, 1983:240). 현재 인간이 자연에 행하는 파괴적인 행위를 고려하면 자연은 인간의 자비를 받아 마땅하다(Ferkany, 2011: 266). 동물도 이런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가 동물에게 가하는 행위를 고려하면 동물 또한 인간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 또한, 자비라는 덕은 사회적 민감성을 불러 일으키고 도덕적 딜레

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Arieli, Grant & Sagiv, 2014: 17).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자비는 동물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은 품성이다.

동물 윤리의 측면에서 자비의 덕목은 동물들이 지각이 있는 존재이며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지각 능력이 있는 동물들을 향해 연민과 공감에 기반한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물의 입장을 고려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비로운 행위이다. 이는 그들에게 영양 섭취를 잘 시켜주고 생활할 곳을 제공해주며 필요한 경우에 의학적 치료를 해주고 사회화 활동하게끔 하는 것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적용의 핵심은 자비의 덕을 인지하는 것이다. 자비는 다른 덕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덕이다. 우리는 ‘힘이 없는 집단’을 위해 자비를 베풀으로써 그들을 지지하고자 한다. 이때, 대부분의 동물은 우리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앞서 제시한 ‘힘이 없는 집단’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비’의 대상이 된다. Rowlands에 따르면,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동물들은 우리가 먹고, 실험하고, 반려동물로서 키우는 힘없는 대상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덕스러운 사람은 동물들을 향해 자비의 덕을 행할 것이다(Rowlands, 2009: 117).

인간만이 무언가에 대한 흥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비인간 동물 또한 무언가에 흥미를 지닐 수 있다. 예컨대 동물 또한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새끼를 지키고자 하며 나름의 집단 사회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이들도 인간처럼 나름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여 살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삶에 대한 흥미가 있고 열정이 있는 동물들은 삶을 지속시키고 싶어하며 고통을 받지 않고자 한다.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은 삶이라는 전제하에, 감각이 있는 생명체는 인간이 베푸는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개, 돼지, 소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과 연관이 높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슴, 곰 그리고 물고기와 같은 야생동물 또한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Ferkany, 2011: 271-272). 예컨대 낚시를 하거나 늑대를 총으로 쏘아 사냥을 하는 등 동물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보살핌, 사랑, 존중, 겸손 등의 미덕을 통한 윤리적 문제의 해결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먼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 이외의 자연과의 교류가 적고 자신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Ferkany, 2011: 279). 예컨대 동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자주 접하는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아니면, 일상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접하고 그들과 교감을 하는 일이 많이 없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거나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대상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외에도,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해왔기 때문에 자연을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Ferkany, 2011: 279). 가령, 항상 육식을 해온 인간이 동물을 음식이 아닌,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물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에 꼭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위협을 느끼는 등의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그들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컨대 모기가 우리를 물어서 우리에게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면 모기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비로운 행위는 모기 또한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모기를 죽이는 것 대신 날아가게끔 치는 정도가 될 것이다(Ferkany, 2011: 273).

덕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덕스러운 행위를 한 인간도 변영을 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살핌, 사랑 등의 가치는 어떠한 생명체가 그 대상이 어떠한 생명체인지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변영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야생에 있는 달팽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번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유기체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번영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미덕이 될 수 없다. 반면 자비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을 번영시킨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권리보다 덜한 해악을 가하며 자비롭게 행위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자비와 인간의 번영은 양립할 수 있다(Ferkany, 2011: 276).

정리하면, 자비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물을 안락사할 때 동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인지를 고려하여 안락사의 시행 여부나 방법을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 안락사 논의에 적절하다. 자비란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보다 대상에게 고통을 감소시켜주거나 해악을 덜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덕이다.

예컨대 질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돼지를 생매장하며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안락사(살처분)를 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자비의 덕을 고려하여 생매장 당하는 돼지들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실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선택보다 그들이 덜 고통스러운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자비로운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이외에도, 살처분이라는 단계까지 가기 이전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수정하거나 구축하여 그들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자비는 경주마 안락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매해 약 70마리의 경주마가 안락사당하는데 이때, 안락사의 주된 사유는 골절과 건·인대 손상 등 운동기 질환이다. 하지만 무조건 안락사만 시킬 것이 아니라 다친 경주마가 승용마나 교육용 말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관련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인간이 동물에게 자비로울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이다. 경주마가 치료 후 승용마 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말 관리·복지체계가 열악해 안락사를 당하는데, 이는 말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자비를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 고려해보면 개선할 수 있다. 법적으로 경주마의 부상으로 인한 안락사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비는 법에 따르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의무보다 더 나아가 배려를 하고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해악을 덜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의 평균수명은 30년인데 경주마는 2~4년을 뛰며 골절 사고 시 안락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인간으로서 경주마 재활 지원, 퇴역마 승마 활용 등 말 복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역견의 안락사에도 자비를 적용해볼 수 있다. 퇴역한 군견은 보통 동물실험용으로 보내지거나 안락사가 시행되었고, 마약 탐지견이 은퇴 후 해부용이나 헌혈용으로 사용된다.²⁰⁾ 사역견이 실험동물로 쓰인 뒤 안락사가 되는 것이 현재 실험동물법에 따르면 적합한 처리이다. 사역견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도 실험이 끝나면 안락사되는 실정은 같다. 실험 후 회복 불능이거나 고통을 계속 느끼는 동물이라면 사실 안락사가 인도적 조치의 일환일 수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을 한 자는 실험이 끝난 후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동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복될 수 있거나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실험동물들조차 대부분 안락사 된다. 실험 후 동물이 건강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건강한 개체로 판단되어도 구제할 방법이나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물구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2017년까지

20) 퇴역한 군견은 보통 동물실험용으로 보내지거나 안락사되고,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마약탐지견이 은퇴 후 해부용이나 헌혈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이 공개됐다. 2012년 동물자유연대 조사에서는 탐지견들이 대학 연구실에 실험용으로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해당 탐지견들은 은퇴 후 수의과대학으로 보내진 공혈견(다른 개에 수혈하기 위한 피를 제공하는 개)이 되었다. 실험동물구조 활동을 벌이는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역견이 실험동물로 쓰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밝혔다(김보경. (2019년04월27일). 사역견, 실험용으로 쓰려면 차라리 안락사하라! *한국일보*).

우리나라에서 실험에 사용된 비글은 15만 마리인데 그중 살아서 실험실 밖을 나간 건 21마리뿐이다.²¹⁾

실험동물은 인간의 연구를 위해 우리가 활용한다. 또한, 사역견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개로 목양견, 경찰견, 군견, 썰매견, 맹인안내견 등 종류는 다양하며 인간을 다양한 영역에서 돕는다. 이렇듯 실험동물과 사역견 모두 인간에게 목숨을 다해 도움을 준 동물인데, 이들에게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고 안락사라는 명목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들에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자비로운 방법 중 하나는, 사역견의 임무가 끝난 뒤 사역을 종료하거나 동물실험을 마친 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기증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와 관련한 법이 최근 개정됐고, 최근에는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까지 생겼다.

하지만 단순히 법개정에 따른 의무만 다하는 것보다 이런 동물들의 입장을 자비롭게 더 헤아릴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실험동물의 경우, 동물실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됐었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한지 판정하는 것은 물론 분양 이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질병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소유주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소유주는 입양에 전념하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입양 후 해당 동물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평생 반려동물로 기르는데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입양한 뒤 또 다른 실험이나 범죄 혹은 강아지 공장의 번식견으로 활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원됐던 동물들인 만큼 더더욱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인간의 몫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자비라는 덕목을 제언한다.

21) 이학범. (2019년 08월 20일). 실험의 끝은 안락사... '실험실 비글' 입양해주 시겠어요? *SBS뉴스*.

2. 친애(friendship)

좋은 친구란, 좋은 사람에 대하여, 선의를 품고 있어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서로가 알고, 주고 받는 사이에서 성립한다(Aristotle, 2015: 211-212). 애정은 감정이지만 친애는 품성 상태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선의를 갖는 것은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품성 상태에 따른 것이다(Aristotle, 2015: 217).

우정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세 가지 우정의 개념은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탁월성, 유익함 그리고 즐거움에 따른 우정이다. 이 중 동물과 인간은 유익함과 즐거움은 주고받을 수 있다. 가령 인간과 개는 ‘즐거운 친구’나 ‘유익한 친구’가 될 수 있다(최훈, 2022: 18). Jordan에 따르면 개와 놀 수 있고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의사소통하며 신뢰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Jordan, 2001: 320). 프뢰딩과 피터슨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동물들이 어떤 형태로든 함께 살고 서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 그것은 인간만큼의 충분히 높을 정도로 또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들은 이 반론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우정은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상호 이익에 기반한 우정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우정만큼 가치가 없을 수 있더라도 전자와 같은 우정은 도덕적으로 의미 있고, 동물들은 확실히 서로 간에 상호 이익이 될 정도로 충분히 의사소통하며 상호 작용한다(Fröoding, 2011: 6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탁월성에 근거한 우정이 어려울 수 있어도 그에 걸맞는 우정을 주고 받으면 된다(최훈, 2022: 20). Helm에 따르면 우정은 상호 보살핌(mutual caring), 친밀함(intimacy), 공유된 경험(shared activity)을 구성하고 있다.²²⁾ 첫 번째로, 인간이 동물을 보살피는 것은

22)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에 따른다.

익숙한 일이다. 오늘날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인식하며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준다. 꼭 함께 사는 동물이 아니어도 길고양이 등과 같이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동물들을 위하여 인간들은 먹이를 제공하고 쉴 곳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반대로 동물이 인간을 보살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물도 자신의 할 수 있는 한 인간을 도우려는 사례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함께 거주하는 인간이 위험에 빠졌을 때 소리를 내어 주변에 도움을 청함으로써 인간을 보살피고자 하는 사례들로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을 보살피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동물의 의지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친밀함은 친구와 친구가 아닌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다. 우리가 친밀함을 느끼는 존재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물과 인간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매일 보는 동물은 한번 지나가며 보는 동물보다 더 친숙하다고 느낀다. 예컨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이에 따라 우리는 더 큰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동물을 자주 접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친숙하다고 느낄 것이다. 더 나아가, 특정 인간보다 특정 동물을 더 친밀하다고 느끼면 전자보다 후자가 더 유의미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은 동물과도 우정을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뜻이 맞는 존재와 함께 생활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마시고, 놀이를 하며, 운동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각자 자신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느낌을 주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인간이 인간 이외에 동물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동물과 공유한 경험이 많을수록 인간은 동물과의 관계를 유의미한 우정관계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사

람들은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과 사진을 많이 찍고 함께 여행을 가며 다양한 경험을 함께 누린다. 이로써 그들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진다.

정리하면, 우정은 서로를 생각하며, 친밀함을 느끼며 공유된 경험을 지니고 있을 때에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우정은 인간끼리만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관계라 할지라도 우정 개념은 동물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관계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물과의 우정은 온전하고 우선적이며 친구 관계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양이, 개, 말 등이 누군가의 제일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과의 우정은 인간들 사이의 우정보다 다소 약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우정으로 규정짓지 않다고 해도, 그들의 관계는 애정과 깊은 공감에 기반하고 있다. 인간의 목표와 열망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과는 관계가 먼 생명체들이라도, 그들과의 감정적인 관계는 가치가 있다(Townley, 2010: 45-46). 우리 주변에 인간과 특정 관계에 놓인 동물 중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 개념은 반려동물이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깊고 가치가 있는데 이중 특히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도덕적으로 더 고려되는 경우가 있다. 반려동물의 대체 불가능함과 고유함은 인간과의 친밀한 또는 우애적인 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친구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성향이 있다(Townley, 2010: 49-50). 이에 따라 친애의 덕이 특히나 인간과 친밀한 반려동물 간의 관계에서 더욱 적용 가능하며 설득력 있다.

동물과 인간의 친애적 관계 즉 '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힘의 불균형, 인간이 친구에게 원하는 인지적 능력에 동물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동물이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힘의 균형이 우정의 조건이 아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권력은 전지전능한 수준이다. 가령, 동물이 밥을 먹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며 꼭 인간의 선택으로만 동물의 생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동물이 활동을 하고 싶어하거나 배고파하는 시간이 있다면 인간은 자신의 일정을 조율해서 동물의 선호에 맞춰주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은 야생 동물과도 교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야생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없지만 교감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음식을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접근하는 야생동물과의 인간의 관계 형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새는 자신이 원하는 취향의 음식을 요구하며 관심을 끌고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는 확실하지 않아도, 꼭 반려동물만이 인간과 친애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둘째, 인지능력을 우정의 조건으로 볼 수 없다. 인간과 비교했을 때 동물이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인지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인간과의 우정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만약, 인지능력이 우정의 조건이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비슷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Townley, 2010: 49-51).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는 어린 아이들끼리의 우정은 한계가 있으며 나이 차이가 발생하는 우정의 관계도 한계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인지능력이 차이 나는 인간들끼리의 우정은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셋째, 동물은 어느 정도 수준의 덕을 지닌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 동물은 동정심, 용맹함, 신의를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품성적 행위를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물들이 음식이 나오는 버튼을 눌렀을 때 옆에 있는 생명체에게 고통스러운 충격을 주는 상황을 설치한 실험이다.

다른 생명체에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면서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결과를 도출한 실험이다(Townley, 2010: 53). 동물들 간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도 그런 행위가 포착된 것은 희귀한 일은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동물이라고 인식하면, 그 대상이 인간이더라도 그들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어도 가하지 않는 모습, 혹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인간을 지키는 모습 등 동물의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면,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덕적 교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Walker에 따르면 동물이 덕을 행할 수 있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인간이 친애의 품성을 발달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동물에 관심을 갖고 친밀함을 느끼면서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친애라는 품성을 확장시키고 발달시키기 때문이다(Walker, 2019: 419).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친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려면 동물이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할 정도로 인간에게 친숙한 동물이다. 최훈에 따르면, 동물이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정 논증’이다. 우정 논증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동물과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동물을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논증에 대해 최훈은 다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인간과 동물 간의 우정이 형성되는 방법은 인간이 우정에 대한 인지적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둘째, 한 종의 특정 개체가 친구가 된다면, 그 종의 다른 개체들도 비록 친구는 아니더라도,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모든 인간과 친구인 것은 아니지만,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듯, 특정 개가 사람의 친구라면, 주인이 없는 개도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우정 논증은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친숙한 동물인 개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들도 친구가

될 수 있다(최훈, 2022: 16).

동물과 인간의 우정은 인간들끼리의 우정에 비해 한계점도 존재한다. 예컨대 동물은 자율성이 없으며 그들의 자유 의지가 인정되지 않는 환경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인간 사이의 우정과 차이점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두 생명체 간의 우정을 방해하거나 그들이 서로에게 갖는 마음을 방해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

Rowlands는 인간과 동물의 우정은 진실되고 우선적일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과 인간의 우정이 인간들 사이의 우정과 같지 않다고 그 가치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동물들로부터 행복을 느끼고, 유추하건데 동물들도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낀다. 즉, 동물과 인간의 우정은 상호간의 행복에 근거한 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동물을 다양한 측면에서 존경하기도 한다. Rowlands에 의하면, 그들의 인내, 용서, 친절함, 부드러움 등은 종(種)에 상관없이 존경할만하다(Rowlands, 2011: 78).

친애는 상호간의 관심, 존중 그리고 애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동물 윤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정은 동물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동물을 안락한 가정으로 입양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거나, 동물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를 하거나 돕는 것이 있다. 동물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인간의 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동물과 우정은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동물 단체를 지지하고 동물과 관련한 생명 감수성을 고취하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즉, 동물이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 또한 동물과의 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동물과의 우정은 그들의 복지를 향상 시킴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동물의 입장에서 보며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이 동물과 우정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친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동물을 안락사하는 것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친애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선의를 갖는 품성 상태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좋게 여겨지는 점들을 본받기 때문에 친애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서로를 만들어준다. 이런 친애가 바탕이 되는 관계는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곧 인간이 동물에게 친애의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운이 좋으면 야생동물과 우정을 형성하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개, 고양이 또는 말과 같은 동물들과 우정을 맺는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종에 한정되지 않는 우정은 인간을 포함한 다른 종에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겸손과 호기심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킨다.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우정은 우리가 변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좋은 영향을 준다.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우정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연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과의 우정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우정은 우리의 인생을 변영하게 한다. 우리가 동물과 인간의 우정이 가능하다고 여기며 그와 관련한 좋은 목표를 설정한다면, 이는 우리의 사회정치적인 지향점에 변화를 가지고 오며 우리의 역량을 확장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착취적인 행위들을 종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예시로는 사냥, 공장식 축산, 고래잡기, 동물실험의 과정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도 인간의 유희를 위한 동물의 착취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Nussbaum, 2023: 277-278). 이의 연속으로 동물과의 우정 즉 동물에 대한 친애는 동물 안락사의 실태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실리적 목적을 우선시하며 친애를 갖는 대상에게 도구적으로 대하며 그들을 안락사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동물을 위한 다른 선택이 있고 그들의 죽음이 불가피한 실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 실리적인 이유, 즉 편리함과 경제적인 손익 때문에 우리가 친애를 갖고 상호 행복을 느끼게 하는 관계에 있는 동물의 생명을 강제적으로 종결하는 것이 덕스러운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동물에게 관심, 존중 그리고 애정을 보이고, 특히 반려동물이나 인간과 가까이 생활하는 야생동물은 그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관심, 존중 그리고 애정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경우에,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의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우리가 친애로 대하는 대상에게 그들의 생명을 종결하지 않으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적법성을 떠나, 친애를 품은 대상에게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그들의 고통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덕스럽지 않다. 불가피한 이유로 안락사를 시행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인지, 효율성을 떠나 불가피한 것이 정말 맞는지 재고해보는 것이 덕스러운 품성을 갖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친애의 덕을 근거로 동물의 안락사를 검토해보았을 때, 그들의 고통과 상태에 더욱 공감할 것이다. 따라서, 동물의 안락사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엄격하게 시행되기 위한 방법으로 본 고에서 친애의 덕목을 제언한다.

제 5 장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의 도덕교육적 함의

앞 장에서 논의한 자비와 친애의 덕목은 동물 윤리의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오늘날의 도덕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창우에 따르면,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규범적인 방향 설정 및 윤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최근 윤리학, 특히 응용윤리학(applied ethics) 혹은 실천윤리학(practical ethics)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과거에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윤리 문제들이 생겨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과 도덕적인 고려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윤리학적 관심을 높아졌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현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볼 때,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의 과학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윤리가 과학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정창우, 2012: 26).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감에 따라 과학 기술 만능주의를 불러오고, 이에 따라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인재에 따르면, 이러한 윤리적 성찰을 체계화하여, ‘과학의 성찰화’와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명윤리교육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명윤리교육을 통해 관련된 논의들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생명윤리 문제의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올바른 선택과 결정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모두에게 생명윤리교육은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생명감수성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며 본 고의 연구를 적용할 수 있다. 본 고는 품성 계발의 측면에서의 덕목 연구이며 초등학생들은 이는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초등학교의

생명 윤리교육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인재에 따르면, 생명윤리교육은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초보적인 수준에서 생명윤리의 개념과 그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열정으로 그에 대처하는 능력과 실천 성향을 갖도록 한다(이인재, 2008: 19). 따라서 준비와 친애의 덕목을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초등학생들의 생명윤리 감수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인재는 생명윤리교육은 생명을 둘러싼 다양한 윤리 문제를 인간 삶의 여러 측면에서 조망해 보는 것으로 여기에는 초등학교 범 교과활동은 물론 비교과활동,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이인재, 2008: 20). 본 논문에서는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의 생명윤리교육에 한정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교육 전반이 아닌 도덕과 교육에서의 생명윤리교육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무엇보다도 초등 도덕과 교육이 그 어떤 교과보다도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시될 문제들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속에서 가장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주제들이며, 이것은 바로 그 어떤 과목보다도 도덕과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인재, 2008: 20).

물론 초등학교에서 생명윤리를 교육할 수 있는 교과들이 도덕 이외에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과학, 사회, 국어, 실과 등이 관련되어있다. 국어 교과에 동물 윤리를 다루는 지문 또는 실과 교과에서 동물 키우기 등이 그 예시이다. 하지만 이인재에 따르면, 이들 교과에 비해 도덕과는 생명윤리와 같은 가치 문제를 우선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초등학교 생명윤리교육의 현황을 가늠해 보는데 의미 있는 척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이인재, 2008: 20). 초등학생들은 현재든 혹은 미래든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련될 수밖에 없는 예비 성인들이므로, 이들이 올바른 생명윤리관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은 당연하고도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생명윤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사고하고 높은 감수성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과 능력들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인재, 2008: 20).

생명 윤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 생명윤리를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주제로는 낙태에 이어 식물 인간·생명 연장 장치·안락사 등이 있다. 이중,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안락사’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시의성이 있다. 특히, 인간의 안락사뿐만 아니라 동물의 안락사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동물 안락사에 대한 지식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락사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윤리학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덕윤리는 덕스러운 성품은 연습과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성 교육을 중요시한다. 정책사업의 일부로서 국가·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인성교육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덕(virtues)을 선정하고,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진단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손경원&정창우, 2014: 28). 특히, 도덕과에서는 덕(德; virtues)을 인성의 핵심 구인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보편적 가치가 성품화된 상태로서의 덕이 곧 인성의 구성요소이며, 인성교육은 덕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관점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손경원&정창우, 2014: 30). 따라서 본 장에서는 동물 안락사의 논의점과 지도 방안을 2022 도덕과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적절한 덕윤리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1 절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도덕교육적 의의

일반적으로 응용윤리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윤리 이론에는 의무윤리, 공리주의, 덕 윤리, 배려윤리 등이 포함된다(정창우, 2012: 41). 이 중 의무윤리와 공리주의는 규범 윤리의 양대 산맥으로서 생명 관련 윤리 문제에 있어서도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윤리적 생명 윤리는 생명의 신성성과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생명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고, 다른 가치들에 대해 생명 가치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공리주의적 생명 윤리는 생명 자체의 가치보다는 생명 활동으로 인해 얻게 되는 행복이나 불행, 쾌락이나 고통, 또는 선호 만족을 강조한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 활동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 생명의 질과 공리성이다(정창우, 2012: 39). 하지만 과학 기술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윤리이론이나 도덕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과학기술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 문제를 특정 윤리이론이나 도덕원리 내에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윤리이론이나 도덕원리를 동시에 고려하더라도 과학 기술이라는 새로운 적용분야 혹은 독특한 맥락 속에서 용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윤리이론이나 도덕원리의 단순 대입 차원을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정창우, 2012: 42-43).

덕 윤리는 외적 행위들의 옳고 그름 또는 행위의 결과들에 대한 판단 보다는, 도덕철학에서 인격과 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전망을 말한다(정창우, 2012: 41). 덕윤리가 동물 안락사의 논의에 한계점 없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덕윤리가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는 경향이 타 도덕 원리에 비해 두드러진다. 이 때문에 도덕과의 생명윤리의 지도, 특히 본 고의 동물 안락사 주제에 대해 비교적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신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졌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안락사’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점의 청소년들에게도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한미정, 2012: 82). 특히, 인간의 안락사뿐만 아니라 동물의 안락사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동물 안락사에 대한 지식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락사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윤리학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안락사 교육은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윤리의 부분이다. 생명 윤리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고민의 정도에 따라 생명 윤리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성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청소년을 위한 생명 윤리교육의 구상이 착실히 준비되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추정완, 2008: 162). 실제로도, 교육의 현장에서 생명 윤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주제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교사들의 생명 윤리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연구에서 도덕 교사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루고 싶은 생명윤리교육의 주제로는 낙태에 이어 식물인간·생명 연장 장치·안락사에 대한 주제가 뒤를 이었다(박인옥, 2005: 494-499). 이는 생명 윤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도덕 교사들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교사의 대부분이 생명윤리에 대해 관심이 많고 생명 위기 현상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학교폭력,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생명윤리교육은 초등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이강미, 2014: 67). 그러나 이강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 교사들이 생명 윤리에 대한 관심은 높으면서도 동시에 생명윤리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 인식 수준이 낮은 이유는 교사들이 이 내용에 대하여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수업 및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윤리 관련 연수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에 따른 지식 형성에 따른 생명윤리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이강미, 2014: 67).

안락사에 대한 교육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죽음과 삶은 떨어질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생각할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도약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생명윤리를 지도하고자 하는 도덕교육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 그러므로 안락사를 주제로 한 생명윤리교육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한미정, 2012: 82). 도덕과에서의 안락사 교육은 다른 교과에서의 안락사 교육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과학적 사실이나 사회적 측면보다는 가치적 측면에서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객관적 학습 이후에 올바른 가치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한미정, 2012: 85). 이렇게 안락사와 관련된 생명윤리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안락사 교육은 생명 윤리교육에 있어서 의미 있는 요소이고, 생명 윤리교육은 도덕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에서도 안락사 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한미정, 2012: 105).

생명윤리 교육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주변의 모든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존중 인식은 자신, 타인,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해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올바른 자연관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가짐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관의 형성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시기에 자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임소영 et al., 2007 :144).

최근 들어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

한 인식의 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동물 학대 등 생명 경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장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동물복지 교육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적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박헌우, 2021: 61).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생명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동물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시의성이 있다. 또한, 이를 자비와 친애에 근거한 덕윤리적 담론은 적용할 만 하다. 왜냐하면 친애는 오늘날 인성교육의 담론 맥락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유덕하게 완성하고 타인과 더불어 탁월성에 근거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사상적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김민수, 2019: 629). 친애를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동물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비는 교육 현장에서 공감, 연민, 이해를 중점으로 두는 환경을 형성하게끔 한다. 이러한 접근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공동체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과 소외된 집단(marginalized group)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을 도덕 교육적으로 적용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사례들을 직접 제시하여 이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학작품이나 영화를 이용하여 동물의 입장에서 일기를 써보는 활동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동물 안락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학작품이 존재하고, 관련된 영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한다면 효과적인 생명 윤리교육이 될 것이다. 통합적 도덕교육을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수업이 가능한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한미정, 2012: 99).

둘째, 학생들이 현실적 상황에서 경험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직면한 생명 윤리적 갈등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동물의 안락사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당 논의의 대상, 즉 동물이 인간의 삶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제시함으로써 생명 윤리적 논의를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명 윤리교육은 ‘지금 그리고 여기’, 즉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혹은 학생들이 장차 직면하게 될 생명 윤리적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거나 미리 고민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현실적 상황에서 경험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고, 선택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보고, 각 대안의 윤리적, 사회적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학습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생명윤리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많이 확보하여 활용해야 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사고하고 토론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켜 주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이인재: 2008: 31).

셋째, 초등학생들이 활용할 자료(대표적으로 교과서의 구성 및 진술 등)도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당위적인 내용을 교사 중심의 훈화식으로 진술되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생명윤리의 내용은 과학의 사실적 내용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면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명공학기술 및 의학적 기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객관적으로 탐구해보고,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최소한의 윤리학적 이론에 의해 탐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비판적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현실감 높은 윤리적 갈등상황을 주고 거기에 맞는 윤리 이론적 근거에 의해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인재: 2008: 31-32).

제 2 절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도덕교육적 적용

1.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동물 안락사의 연관성

공통교육과정 도덕 교과와 내용체계는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및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로 나뉜다. 동물에 대한 주제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중학교) 도덕과 내용체계 - 자연과의 관계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자연의 본래 가치에 관한 이해를 높여 생태전환을 이끈다. ·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환경 위기의 극복을 돕는다. 	
범주	학년군	
	3~4학년	5~6학년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은 왜 소중할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속 가능한 삶이란 무엇일까?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 경시 사례 조사하기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살펴보기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기	위한 계획 세우기
가치· 태도	·생명에 대한 존중 ·생태 감수성 함양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

2022 개정 초등 도덕과에서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본 고의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위의 [표1] 따르면 해당 영역에서 자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자연의 본래 가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핵심적인 목표로 생각한다. 특히, 3~4학년군에서 지식·이해 범주하에 ‘·생명은 왜 소중할까?’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과정·기능 범주하에 ‘·생명 경시 사례 조사하기’와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탐색하기’를, 그리고 가치·태도 범주하에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태 감수성 함양’을 다룬다. 즉, 3~4학년군에서 생명 경시 사례를 조사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동물 안락사의 실태를 사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해 바람직한 덕, 즉 자비와 친애를 제시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다룰 수 있다.

[표3] 초등학교 도덕과 성취기준 - 자연과의 관계

[4도04-01] 생명 경시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한다.
[4도04-02]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공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며 생태 감수성을 기른다.
[6도04-01] 지구의 환경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자신의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6도04-02] 지속 가능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

화하여 자연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실천 방안을 찾는다.

해당 내용체계의 구체적인 성취기준은 [표2]과 같다. [표2]의 [4도 04-01] 성취기준에 따르면 생명 경시 사례를 실제로 조사하며, 이를 위한 해결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한다.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 혹은 형식적 조작기의 초기에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연역적 사고보다는 귀납적 사고에 익숙하다. 따라서 현대의 인간들이 동물을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진단하는 경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류기련, 2020: 154).

이를 위한 사례로 본 고에서 다루었던 안락사 사례를 생명 경시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에 알맞은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하였을 때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덧붙여, 안락사의 개념을 제시하며 그 취지와 그것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고통받는 동물에게 안락한 죽음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고통을 받지 않아도 실리적인 이유도 안락사가 진행됨을 지도할 수 있다. 예컨대 동물보호소의 동물들의 공고 기간이 끝났을 때 안락사가 진행된다는 사례는 살처분, 경주마 총살 등의 사례보다 잔인함이 덜하면 서도 안락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보호소의 동물들 중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낄 수 동물인 반려동물들을 예시로 제시하여 그들에 대해 친애에 기반한 공감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그 다음, 그러한 동물들의 안락사의 현실을 제시한 후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행하는 대우가 적합한지 논의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해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살처분, 경주마 총살 등의 사례 또한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생매장’, ‘총살’과 같은 구체적인 안락사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생명을 종결시킨다고 지도를 하여 그에 대한 인간의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덕윤리적 적용의 실제

다음은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낄 수 동물인 반려동물들이 보호소로 갔을 때의 상황을 제시하여 그들에 대해 친애에 기반한 공감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학습지의 예시이다.

[표4] 친애에 기반한 동물 안락사 탐구 학습지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가루네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가루 이렇게 넷이에요. 다들 막 내인 가루를 귀여워해줬지요. 가루가 엄마의 말을 듣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거나 오빠에게 손을 내밀면 간식을 주곤 했어요. 가루는 자신이 그 어떤 개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날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가루는 산책하러 간다는 것을 알았지요. 가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산책이에요. 온 가족이 산책하러 나갈 때면 아주 즐거워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멀리까지 나가나봐요. 차를 너무 오래 타서 졸음이 쏟아졌어요.

잠에서 깨자 멋진 공원이 보였어요. 아빠는 가루를 안아서 내려줬어요. 가루는 나무 밑에서 신기하게 생긴 벌레들을 발견했지요. 벌레를 한참 구경하다가 오빠에게도 보여주려고 오빠를 부르며 뒤돌아 봤어요. 그런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루는 덜컥 겁이 났어요. 왜 아무도 없지? 엄마, 아빠, 오빠, 어디 있어요?

가루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점점 어두워지고 배도 고팠어요. 가루는 나무 뒤에 숨어서 데리러 와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때였어요.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의 발소리

가 들려왔어요. 가루는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²³⁾

- 1) 가루는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 2) 가족들은 가루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 3) 가루에게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2. 다음은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동물 안락사란?

안락사란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을 말해요. 영어의 euthanasia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동물 안락사 역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극단적인 의료 치료를 없애면서 동물들이 죽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 치유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동물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자원이 부족할 때, 주로 유기견이나 유기묘에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관련된 기관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다른 곳에 입양되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인을 잃은 동물은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그 공간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유기·유실동물은 계속 발생하므로 안락사를 통해 보호 동물의 수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 1) 동물은 우리의 친구일까요?
 - 2) 버려진 반려 동물을 안락사 시켜도 될까요?
 - 3) 건강한 동물이 안락사를 당할 때 어떤 기분일까요?
3. 다음의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안락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생사 여부마저 비용과 편리 등 현실적인 이유로 재단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문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올바르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동물들을 인간이 이용한 뒤 안락사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자비에 기반한 공감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학습지의 예시이다.

[표5] 자비에 기반한 동물 안락사 탐구 학습지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23) 카라에듀(<https://karaedu.org/>) 동물권 학습지도안 초등4~6학년 반려동물 활동지 참고하였다.

수아는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어느날 산에 올라가서 풍경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거미가 나타나 수아의 팔 위에 앉았어요.

위의 상황에서 거미를 죽일 수도 있고 거미가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팔을 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자비란 힘이 있는 누군가가 그렇지 않은 대상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자비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장난꾸러기 꼬마 쥐는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와 맞선다면 모두들 자신의 용기를 인정해줄 것 같았습니다. 사자를 찾아 산 위에 오르던 장난꾸러기 꼬마쥐는 무사히 사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꾸러기 꼬마 쥐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자는 훨씬 크고 용맹스러웠어요. 장난꾸러기 꼬마 쥐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의 용기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잠자고 있는 사자의 몸 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자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올라가던 장난꾸러기 꼬마 쥐는 막상 사자의 몸 위에 올라가자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생기자 사자의 몸 위에서 신나게 데굴데굴 구르며 놀았어요.

“도대체 누가 내 잠을 방해하는 거냐!”

장난꾸러기 꼬마 쥐 때문에 잠에서 깬 사자가 고통을 질렀습니다. 사자가 소리를 지르자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산이 울렸습니다. 장난꾸러기 꼬마 쥐는 무서워서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사자님, 살려주세요. 이번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언젠간 제가 꼭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자신의 잠을 방해한 것이 꼬마 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꼬마 쥐를 죽이는 것은 동물의 왕인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쥐를 죽이지 않는 것

이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아니고, 쥐를 살려두면 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자는 장난꾸러기 꼬마 쥐를 살려주었어요(성지영, 2021: 140-142).

1) 자비로운 행동이 무엇일까요?

2) 자비로운 행동의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인간의 유희를 위해 몸에 무리가 가도록 경기장을 질주하고, 하루종일 등에 사람을 태운 채 작은 승마장을 빙글빙글 도는 말들은 대부분 필연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거나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더 그러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말들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태어나고 살았지만 사회가 정해놓은 용도에 따라 이용되다 그 쓸모가 다 하면 손쉽게 처분하는 물건과 같이 취급당합니다.

말의 평균 수명은 25-35년 정도이지만 경주마들의 평균 은퇴 시기는 2-4살에 불과합니다. 어린 나이에 은퇴한 퇴역 경주마들은 이후 '승용'이나 '번식용'으로 전환되거나 '식용'으로 도축 또는 안락사되며, 용도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기타 용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한 퇴역 후 교육이나 보호의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은 채 퇴역마의 절반 가량을 도축하는 행태도 문제입니다. 퇴역 경주마 중 약 70% 정도가 4세 이하의 아주 어린 나이에 은퇴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다시 훈련시켜 승용으로 전환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상당하거나 치료가 필요

한 말들을 보호할 시설도 없어 개인이 직접 구조에 나서지 않으면 대부분의 말들이 안락사 또는 식용으로 도축당하고 있습니다.

- 1) 글에서 인간은 경주마들에게 자비롭게 행동하고 있나요?
- 2) 우리가 경주마들에게 자비롭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 6 장 결론

동물의 보호는 동물이 인간과 동일하다거나 인간과 같은 이성과 분별력을 지닌다는 데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동물도 인간처럼 아픔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동물의 그러한 점을 배려해야 한다. 주관적 감성은 객관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표현을 통해 전달 가능하며, 이는 인간과 동물에 모두 유사하나, 동물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없는 인간이 동물의 고통과 두려움을 판정할 수는 없다(구인회, 2002: 253-254). 이렇게 인간과 유사하지만 또, 다르기도 한 ‘동물’들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연구자는 인간이 동물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해볼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되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개인의 덕적 품성에 근거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고의 연구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에 의해 생명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인간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는 ‘동물 안락사’에 덕윤리를 적용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동물의 안락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단순히 과학적·경제적 손익 또는 합법의 유무를 고려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덕윤리적 관점에서 적합한 품성인 자비와 친애를 갖춘 자세로 대할 수 있는 방향에 주목하였다. 덧붙여, 그러한 방향성을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2022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제언한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의성이 있다. 첫째, 생명은 존엄하고 중요한 가치이다. 이때, 안락사는 생명의 의미가 논의의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둘째,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이유가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고통받는 존재에게 삶을 종결시켜줌으로써 고통을 제거한다는 사실이 죽음을 정당화한다고 보는 것은 자칫 지나친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생명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안락사 논의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동물 안

락사에 중점을 둔다. 왜냐하면 동물 안락사는 인간 안락사에 비해 생명이 지닌 본래의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현실적 필요나 사회적 공익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 안락사 논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락사 대상 즉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일이 어렵다. 둘째, 한 생명에 대해 제3자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또는 더 이상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동물은 인간에 비해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동물은 취약하다는 이유로 인간이 역사적으로 이용해왔고 그들의 취약성은 우리 사회 속에서 크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고통을 제거해주기 위하여 삶을 종결시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동물 안락사는 동물의 고통을 제거하려는 목적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손실 비용 절감의 목적이 지배적이다. 동물은 인간과 더불어 거주하며 인간의 윤리, 책임, 의무의 범위 안에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의 생명을 종결하는 단계와 그전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을 물건처럼 대하며 비윤리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우리는 동물 안락사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덕윤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행위자 중심의 도덕이다. 둘째, 실천을 강조한다. 셋째, 도덕적 의무의 영역이 끝나는 곳에서 도덕적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도덕의 영역을 확대, 보완할 수 있다. 넷째, 상황 맥락적 고려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물 안락사 논의에 적용하고자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 안락사는 안락사의 대상과 안락사의 결정권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입장에서 안락사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덕윤리가 적합하다. 둘째, 동물 안락사는 한 생명의 마지막 경험이므로 안락사당하는 생명체가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도록 안락사와 관련된 인간의 품성이 중시된다. 셋째, 동물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그들은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생명 종결 단계를 존중하고 책임져야 한다. 넷째,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논의의 핵심이 되는 동물 안락사의 논의점에 대해 다른 윤리에 비해 덕윤리가 적절한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덕윤리를 통해 동물이 안락사되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다.

덕은 하나의 성품의 상태, 즉 바르게 선택하려는 하나의 고정된 성향이다. 이러한 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성품의 특성이고 도덕적 덕이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품성이다. 본 고에서는 동물 안락사에 대한 덕윤리적 적용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친애와 자비라는 덕을 제시한다.

먼저, 자비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물을 안락사할 때 동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인지를 고려하여 안락사의 시행 여부나 방법을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 안락사 논의에 적절하다. 자비란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보다 대상에게 고통을 감소시켜주거나 해악을 덜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덕이다.

친애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선의를 갖는 품성 상태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좋게 여겨지는 점들을 본받기 때문에 친애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서로를 만들어준다. 이런 친애가 바탕이 되는 관계는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곧 인간이 동물에게 친애의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친애는 상호간의 관심, 존중 그리고 애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동물 윤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정은 동물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동물을 안락한 가정으로 입양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거나, 동물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를 하거나 돕는 것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친애와 자비는 동물 안락사 논의에 적용 가능한데, 이는 도덕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생명윤리 교육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 뿐만 아니라 인간 주변의 모든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존중 인식은 자신, 타인,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해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올바른 자연관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가짐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관의 형성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의가 확장되며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 ‘안락사’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점의 청소년들에게도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안락사 교육은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윤리의 부분이다. 생명윤리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고민의 정도에 따라 생명 윤리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성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적어도 청소년을 위한 생명 윤리교육의 구상이 착실히 준비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생명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동물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시의성이 있다. 또한, 이를 자비와 친애에 근거한 덕윤리적 담론은 적용할만 하다. 왜냐하면 친애는 오늘날 인성교육의 담론 맥락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유덕하게 완성하고 타인과 더불어 탁월성에 근거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민수, 2019: 629). 친애를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동물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비는 교육 현장에서 공감, 연민, 이해를 중점으로 두는 환경을 형성하게끔 한다. 이러한 접근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공동체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과 소외된 집단(marginalized group)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너스바움은 동물도 우리와 같은 존재(They're just like us.)로 보는 관점의 변화를 말한다. 지구적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동물뿐만 아니라 비인간동물도 최소한의 품위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의 종을 유지하

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자연적 권리가 있는 존재이다.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은 고통이나 불행의 문제를 넘어 부정의한 것이다. 동물이 누려야 할 자연적 권리를 우리가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은 윤리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봐야한다(이순성, 2014: 63).

너스바움이 말하는 ‘동물도 우리와 같은 존재’의 의미는 동물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동일하다거나 또는 동물이 모든 권리를 인간과 똑같이 향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물도 우리처럼 풍요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fourishing existence)이며, 그들이 이러한 존재인 한, 인간처럼 삶에 대한 자연적 권리를 갖고 이 권리에 대한 침해는 고통이나 불행의 차원을 넘어 부정의하다는 의미이다. 동물의 권리가 실정법이 보다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동물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들의 확장된 공감의 요구된다. 법의 변화나 제정에 앞서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이고 그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동물에 대한 보다 더 큰 공감이다.

사실, 동물은 여러 면에서 인간과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우리는 존재의 양상이나 속성을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분류하여 존재의 위계를 만들고 각각에 맞는 위치 매김을 한다. 이에 따라 동물은 우리가 그들의 내재적 가치와 권리에 대해 말할 때조차 여전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권리를 우리가 대신하여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나 태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이순성, 2014: 66).

인간과 동물이 모든 점에 있어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모두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것이다. 하지만 왜 동물은 인간과 같이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구인회, 2002: 252).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동물에는 허락되어있다.

동물을 사고 파는 것,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유산으로 상속받거나 선물로 주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동물은 상당한 높은 수준의 지능을 소유한다 해도 그들의 감각기관, 운동 가능성과 본능에 따라 하나의 고정된 생활방식에 묶여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물도 친밀한 사회적 관계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동물 간에 혹은 동물과 인간 사이에 법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구인회, 2002: 253). 하지만 법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고통을 묵언할 수는 없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미 동물의 다양한 특성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물도 인간과 유사한 면이 많은 생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아 동물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들을 덕스럽게 대하는 것은 안락사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동물윤리논쟁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동물 윤리에 덕윤리를 적용하여 채식과 실험동물의 윤리성을 살펴보는 연구나 동물안락사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를 펼치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동물 안락사에 덕윤리를 적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덕윤리가 동물 안락사를 포함한 동물 윤리 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 논문을 계기로 동물 윤리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생명의 위기는 생명을 바라보는 생명관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생명을 도구화하면서 심화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간중심적인 생명관을 생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중심적 생명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박종무, 2014: 119). 우리 사회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신하여 덕스러운 인간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구인회. (2002).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 김구. (2011).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제2판). 비앤엠.
- 김성동. (2018). 피터싱어의 실천윤리학 읽기. 세창미디어.
- 나영, & 박상규. (2020). 통계적 연구방법론의 이해(2판). 신영사.
- 박재학 & 안나. (2020). 동물과 인간. 토일렛프레스.
- 박찬구. (2016). 생활속의 응용윤리(1판). 세창출판사.
- 성지영. (2021). 엄마 아빠가 읽었던 지혜 쭉쭉 이솝이야기. 깊은나무.
- 최훈. (2015). 동물을 위한 윤리학. 사월의책.
- 최훈. (2019). 동물윤리대논쟁. 사월의책.

2) 논문

- 김민수. (2019).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론의 현재적 의미 재구성과 인성 교육-[니코마코스 윤리학] 의 8 권, 9 권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51), 599-633.
- 김상득, & 손명세. (2000). 안락사: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생명윤리, 1(1), 97-111.
- 김수정. (2009).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생명윤리에의 적용. 생명윤리정책연구, 3(2), 135-153.
- 김완구. (2017). 환경윤리에서 실천 문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

- 김완구, & 심세훈. (2020). 동물윤리의 주요 쟁점에 대한 덕 윤리학의 응용 방안에 대한 연구. *환경철학*, (30), 37-67.
- 김요한. (2004). 덕 윤리와 생명윤리: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덕 윤리의 적용. *범한철학*, 33, 259-282.
- 김종용. (2019). 현대 윤리학 관점에서 본 禪과 자비-현대 '德'윤리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9), 311-330.
- 노영란. (2009). 허스트하우스 (Rosalind Hursthouse) 의 옳은 행위에 대한 덕윤리적 설명. *철학논총*, 55, 107-128.
- 류기련. (2020). 마크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 류지한. (2003).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철학논총*, 31, 43-73.
- 문성학. (1998). 안락사의 도덕성 논쟁. *철학논총*, 15, 231-250.
- 박만평. (2022). 반려동물의 살처분 제도에 관한 연구-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70, 87-119.
- 박인옥, 조은희, 소경희, 김희백, & 박지영. (2005). 생명윤리와 생명윤리 교육에 대한 중·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생물교육*, 33(4), 491-504.
- 박정호. (2017). 플라시보 효과: 의사-환자 관계에서 증여 행위와 그 도덕적 가치. *사회와이론*, 7-41.
- 박종무. (2014). 학술 2-유기동물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과 사례를 통한 발전적 해결방안.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50(2), 117-119.
- 박종무, & 구인회. (2018). 공생명론 관점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생명윤리*, 19(1), 17-35.
- 박헌우. (2019). A1-1-03: 초등학교에서 동물복지교육의 교육적 접근과 활용 연구 (I).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 77, 61-61.
- 손경원, & 정창우. (2014). 교과교육학: 초, 중, 고 학생들의 인성 실태 분석 및 인성교육 개선 방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33, 27-52.

- 송민호. (2004).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덕윤리적 접근
- 엄성우. (2021). 덕스러운 성품의 중요성. 윤리학, 10(1), 1-20.
- Um, S. W. (2010). Taking Pleasure in Acting Virtuously: Aristotle on Virtue and Pleasure. 철학사상, 37, 131-147.
- 유원기. (2009).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한 행동”. 철학연구, 111, 25-49.
- 이강미, & 이상원. (2014). 초등 교과교육: 생명윤리에 대한 초등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조사. 한국초등교육, 25(2), 61-80.
- 이순성. (2014). 공감, 지구적 정의, 동물권리. 환경철학, 18, 61-90.
- 이인재. (2008).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의 생명 윤리 교육. 생명윤리, 9(1), 19-32.
- 임소영, 강민정, 장옥기, & 이은우. (2017). 반려견과 함께하는 동물매개 교육이 초등학생의 생명존중 인식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21(3), 143-158.
- 장정아. (2022). 다문화 시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덕 윤리학 도입의 필요성 고찰. 인문사회 21, 13(1), 2389-2404.
- 정결. (2021). 동물 윤리의 도덕적 접근법. 철학논총, 104, 303-322.
- 정창우. (2012). 도덕과에서 과학기술윤리교육의 내용체계 및 지도방법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5), 25-50.
- 주선희. (2018). 품성에서 지성으로: 덕윤리에 대한 듀이의 자연주의적 해석. 인격교육, 12(3), 5-22.
- 최훈. (2022). 동물의 존엄성과 개 식용 문제의 철학적 고찰. 환경법과 정책, 30, 1-30.
- 추정완. (2008). 청소년을 위한 생명윤리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 정책연구, 2(3), 257-273.
- 한미정. (2012). 안락사 교육에 대한 도덕과 교과서 분석 및 제언. 윤리철학교육, 17, 81-107.
- 홍영선, 염창환, & 이경식. (1999). 안락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지, 2(1), 1-6.

3)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8524호, 2021. 11. 30., 일부개정)

교육부. (2022).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6]).

김나리. (2019년 9월 19일). 또다시 자행된 생매장식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대로 소명하고 시정하라! *한국애견신문*.

<https://www.koreadognews.co.kr/m/page/view.php?no=2363>

김보경. (2019년04월27일). 사역견, 실험용으로 쓰려면 차라리 안락사하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51561791525>

노기섭. (2022년9월9일). 경주마 안락사 연평균 70마리...치료할 수 있는데도 안락사 당해.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0901039910021003>

농림축산검역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동물실험 및/또는 실험동물 관련 위원회(IACUC)표준운영 가이드라인

동물보호법 (법률 제19486호, 2023. 6. 20.,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전부개정)

이학범. (2019년 08월 20일). 실험의 끝은 안락사... '실험실 비글' 입양 해주시겠어요?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0903

카라에듀(<https://karaedu.org/>) 동물권 학습지도안 초등4~6학년 반려동물 활동지

한양대학교 ERICA실험동물센터 “실험동물 안락사 기준 및 방법”

헬스코리아뉴스관리자. (2011, 1월 9일). [향의문] 구제역 생매장 살처분 즉각 중단하고, 소, 돼지 백신 전국 접종하라! *헬스코리아*.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19>

2. 국외문헌

1) 단행본 및 번역서

- Aristotle. (2015). 니코마코스 윤리학. 돈을새김.
- Aristotle. (2012). 에우데모스 윤리학. 한길사.
- Beauchamp & Childress. (2017).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6판). 부크크.
- Kazee, J. (2011). 동물에 대한 예의. 책읽는수요일.
- Nussbaum, M(2023). Justice for animals: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Simon & Schuster.
- Regan, T. (2004).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wlands, M. (2018). 동물도 우리처럼. 달팽이출판.
- Rowlands, M. (2009). Animal Rights and Moral Theories. Palgrave
Macmillan.
- Singer, P. (2012). 동물해방. 연암서가.

2) 논문

- Abbate, C. (2014). Virtues and animals: A minimally decent ethic for practical living in a non-ideal world.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27, 909-929.
- Annas, J. (2008). Virtue ethics and the charge of egoism. *Morality and self-interest*, 205.
- Arieli, S., Grant, A. M., & Sagiv, L. (2014). Convincing yourself to care about others: An intervention for enhancing benevolence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82(1), 15-24.
- Cardinale, B. J., Duffy, J. E., Gonzalez, A., Hooper, D. U., Perrings,

- C., Venail, P., ... & Naeem, S. (2012). Biodiversity loss and its impact on humanity. *Nature*, 486(7401), 59–67.
- Cole, J., & Fraser, D. (2018). Zoo animal welfare: The human dimension. *Journal of applied animal welfare science*, 21(sup1), 49–58.
- Ferkany, M. (2011). Mercy as an environmental virtue. *Environmental Values*, 20(2), 265–283.
- Friedlander, H. (1997). *The origins of Nazi genocide: From euthanasia to the final solution*.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 Fröding, B., & Peterson, M. (2011). Animal ethics based on friendship. *Journal of Animal Ethics*, 1(1), 58–69.
- Hursthouse, R. (2006). Applying virtue ethics to our treatment of the other animals. *The practice of virtue: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in virtue ethics*, 136–55.
- Jordan, J. (2001). Why friends shouldn't let friends be eaten: An argument for vegetarianism. *Social Theory and Practice*, 27(2), 309–322.
- Oakley, J. (2013). Virtue ethics and bioethics.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rtue ethics*, 197–220.
- O'Driscoll, L. H. (1983). The Quality of Mercy.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1(2), 229.
- Rowlands, M., & Rowlands, M. (2009). Virtue ethics and animals. *Animal Rights: Moral Theory and Practice*, 98–117.
- Persson, K., Selter, F., Neitzke, G., & Kunzmann, P. (2020). Philosophy of a “good death” in small animals and consequences for euthanasia in animal law and veterinary practice. *Animals*, 10(1), 124.
- Reilly, J. S., & Blackshaw, A. W. (2001). Euthanasia of animals used

for scientific purposes ANCCART.

Rollin, B. E. (2009). Ethics and euthanasia. *The Canadian Veterinary Journal*, 50(10), 1081.

Rowlands, M. (2011). Friendship and Animals: A Reply to Fröding and Peterson. *Journal of Animal Ethics*, 1(1), 70-79.

Sandler, R. (2012). Intrinsic value. Ecology, and Conservation. *Nature Educational Knowledge*, 3(4).

Schinkel, A. (2008). Martha Nussbaum on animal rights. *Ethics and the Environment*, 41-69.

Salkever, S. G. (2014). Finding the mean: Theory and practice in Aristotelian political philosophy (Vol. 79). Princeton University Press.

Townley, C. (2010). Animals as friends. *Between the Species*, 13(10), 3.

Underwood, W., & Anthony, R. (2020). AVMA guidelines for the euthanasia of animals: 2020 edition. Retrieved on March, 2013(30), 2020-1.

Walker, R. L. (2019). Virtue ethics and laboratory animal research. *ILAR journal*, 60(3), 415-423.

Yeates, J. (2010). Ethical aspects of euthanasia of owned animals. In *Practice*, 32(2), 70-73.

3) 기타

Guidelines for euthanasia of laboratory animals (International Council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ICLAS)

Abstract

Virtue ethics approach on animal euthanasia

Park Jeongsu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rection and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applying virtue ethics to animal euthanasia in an attitude with the virtues of mercy and friendship. Considering that animals can feel pain, ethical discussions on the moral status of animals are needed. The fact that animals are in a vulnerable group compared to humans, discussion of animal euthanasia is timely sensible. Among these ethical discussions, virtue ethics gives appropriate implications. This is because we can respect and be responsible for terminating animal lives by considering the context in which animals are euthanized according to virtue ethic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moral implications for animal euthanasia based on the virtue of mercy and friendship.

This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bout virtue ethics research on animal euthanasia. First, mercy is an appropriate virtue and applicable to discussing animal euthanasia. In terms of animal

euthanasia, the virtue of mercy is related due to the fact that we can show mercy based on compassion and empathy toward animals with perceptual abilities. In other words, it is a merciful act as a human being to be considerate of the animal's position.

Secondly, friendship in discussing animal euthanasia is also an appropriate virtue and applicable. Even if euthanasia is performed for inevitable reasons, reconsidering if it really is a choice that considered animals' position or not would be a virtuous act. When we examine euthanasia of animals based on the virtue of friendship, we can become more sympathetic to their pain and condition.

Thirdly, first and second conclusions stated above have implications on moral education. Bioethics education is about respecting not only human beings, including themselves, but also the lives of all nature around humans. Through friendship, personality education can be conducted based on the relationship with animals that coexist with humans as well as humans. In addition, mercy creates an environment that focuses on empathy,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in the educational field. This approach not only creates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but also with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and helps to form a desirable personality and make marginalized groups feel a sense of belonging.

I suggest that humans make effort to take a look at animals who cannot express and convey their position in words. This paper's discus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serves as a guide for humans to coexist with animals.

**keywords : Animal euthanasia, Animal ethics, Virtue ethics,
Mercy, Friendship, Mor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21-28688